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조사



이 보고서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 나성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공 동 연 구 원 : 장범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박민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황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여재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성욱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김봉식(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연 구 원 : 김지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이일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전수연(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허영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목 차

요약

I 서 론

II 주요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 연차보고서 사례

- 1. 미국 FCC 10
- 2. 영국 Ofcom 13
- 3. 호주 ACMA 17
- 4. 이탈리아 AGCOM 20
- 5. 주요국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21

III 2008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성과분석

- 1.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24
 - 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24
 - 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 31
 - 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38
 - 라.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41
- 2.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송 정착 50
 - 가.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50
 - 나.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55
 - 다. 방송의 다양성확대를 통한 국민문화 향상도모 61
 - 라.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 64
 - 마.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 65

3. 이용자 편의 제공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70
가.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70
나.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74
다.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80
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82
마.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89
4.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93
가. 인터넷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	93
나.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101
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106
라.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117

IV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표 목 차

〈표 Ⅱ - 1〉	각국 연차보고서의 구성 비교	22
〈표 Ⅲ - 1〉	제정안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25
〈표 Ⅲ - 2〉	'08~'12년 중기재정 계획(안)	27
〈표 Ⅲ - 3〉	'09년 주요 예산 운용 계획(안)	27
〈표 Ⅲ - 4〉	'09년 방송통신 R&D예산(안)	30
〈표 Ⅲ - 5〉	전 세계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전망('06~'12)	36
〈표 Ⅲ - 6〉	2008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 계획(안) 세부사항	40
〈표 Ⅲ - 7〉	'08년 타당성조사 및 파일럿프로그램 협력사업 현황	42
〈표 Ⅲ - 8〉	국가별 정보 세부 내용	45
〈표 Ⅲ - 9〉	품목/서비스 정보 세부 내용	45
〈표 Ⅲ - 10〉	북경 방송통신 홍보관 현황	47
〈표 Ⅲ - 11〉	총 행사참석자	48
〈표 Ⅲ - 12〉	정부측 주요 참석자	49
〈표 Ⅲ - 13〉	민간연사 참석 현황	49
〈표 Ⅲ - 14〉	지상파DMB·위성DMB 현황	50
〈표 Ⅲ - 15〉	DMB 사업자 매출 현황	50
〈표 Ⅲ - 16〉	위성DMB의 채널수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	51
〈표 Ⅲ - 17〉	방송법 상 매체별 소유제한 규정 현황	52
〈표 Ⅲ - 18〉	방송법상 매체별 경영규제 규정 현황	53
〈표 Ⅲ - 19〉	공익성방송분야 변천 과정	56
〈표 Ⅲ - 20〉	2009년도 공익성 방송분야	56
〈표 Ⅲ - 21〉	심사항목 및 배점	57
〈표 Ⅲ - 22〉	기준 변경 사항	59
〈표 Ⅲ - 23〉	권고항목 조정 및 적용기준 표준화 현황	60
〈표 Ⅲ - 24〉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조정	60
〈표 Ⅲ - 25〉	중소 납품업체 거래조건 개선	60

〈표 Ⅲ-26〉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도	61
〈표 Ⅲ-27〉 과태료 및 시정명령 세부 내역	66
〈표 Ⅲ-28〉 방송평가제 관련 연구	67
〈표 Ⅲ-29〉 매체에 따른 방송평가 영역(내용·편성·운영)별 배점	68
〈표 Ⅲ-30〉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구분	68
〈표 Ⅲ-31〉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69
〈표 Ⅲ-3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효과	71
〈표 Ⅲ-33〉 상호접속료 개정 주요내용	80
〈표 Ⅲ-34〉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개정	85
〈표 Ⅲ-35〉 해킹·바이러스 신고 현황	93
〈표 Ⅲ-36〉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치현황	99
〈표 Ⅲ-37〉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 보급현황	101
〈표 Ⅲ-38〉 「메일서버등록제(SPF)」 적용현황	101
〈표 Ⅲ-39〉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BcN 포함)	102
〈표 Ⅲ-40〉 연도별 BcN 보급 목표	103
〈표 Ⅲ-41〉 인터넷 이용통계	104
〈표 Ⅲ-42〉 5대 통신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개선내용	107
〈표 Ⅲ-43〉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기술적 평가 종합 결과	108
〈표 Ⅲ-44〉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객관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109
〈표 Ⅲ-45〉 사업자별 최저 보장속도 개선 내용	109
〈표 Ⅲ-46〉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현황(2008. 9월 현재)	112
〈표 Ⅲ-47〉 통신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113
〈표 Ⅲ-48〉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소요 예산	117
〈표 Ⅲ-49〉 2008년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내용	120

그림 목 차

[그림 Ⅲ - 1]	개편 현황	28
[그림 Ⅲ - 2]	방송통신 콘텐츠 종합적인 진흥계획 구현도	37
[그림 Ⅲ - 3]	방송법상 매체별 경영규제 규정	53
[그림 Ⅲ -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78
[그림 Ⅲ - 5]	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 확보 방안	84
[그림 Ⅲ - 6]	우리나라 TV 방송 주파수대역 이용계획	86
[그림 Ⅲ - 7]	개인정보 침해사례 현황	96
[그림 Ⅲ - 8]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99
[그림 Ⅲ - 9]	4대포털사의 매출 추이	104
[그림 Ⅲ - 10]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안)	113

요 약 문

1. 과 제 명: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조사

2. 연 구 기 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연구책임자: 나 성 현

4.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 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공표해야 한다. 방송통신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위원회 업무에 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목적은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연구방법은 문헌 및 해외사례 조사로, FCC, Ofcom, ACMA 등 국외 주요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연차보고서를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의 발간방향, 발간 형식, 주요 수록 내용 등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2008년도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정책에 대한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5. 연구수행내용 및 결과

본 보고서는 I 장 서론에서 연구 배경, 목적, 방법 그리고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에 대해 설명한다. 그 다음 II 장에서는 주요국(미국/영국/호주)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연차보고서의 발간법령 및 연차보고서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III 장에서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 성과분석을 제시한다. IV 장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I. 서 론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중앙행정기관도 관련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 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공표해야 한다. 방송통신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각종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현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위원회 업무에 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심도 있는 사전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방통규제기구의 연차보고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의 발간방향, 발간 형식, 주요 수록 내용 등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정책에 대한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방송통신연차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동 과제를 통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실 있는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 방송·통신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주요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연차보고서 사례

먼저, 주요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 연차보고서 구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발간법령 및 연차보고서 구성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FCC는 개정된 통신법에 의해 직전 회계연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CC의 연차보고서는 개정된 통신법에 의거하여 국내외 시장의 정책적인 문제, 위원회 업무 성과, 보유 인력과 시설의 적절성,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기금 내역 등, 그리고 새로운 입법의 잠재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Sec. 4). 연차보고서 구성을 살펴보면, 시작 부분에 19페이지 가량 기관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자국 정보통신 시장의 우선 과제를 반영한 중장기적 계획에 세우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성과에 이를 기술하고 있다. 2006/07 연차보고서의 경우 지난 계획(2003~2008년)을 수정한 2006~2011년 중장기 계획의 전략과 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분야는 광대역(broadband), 경쟁, 주파수, 미디어, 공공의 안전 및 국가보안, FCC의 근대화이다. 재정보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계 연도의 주요 재무제표 및 주식, 감사 보고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당해 감사보고서 사본은 물론, 전년도 감사 결과 반영 현황, 당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Ofcom은 'Ofcom 설치법'(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c. 11))과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c. 21-3-(10)))에 입각하여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and Accounts)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Ofcom은 회계 연도 종료 시점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미디어 관련부처의 장관¹⁾에게 당해 연

1)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우리나라의 국회 상임위원장에 해당하는 의원이 소관 행정부처의 장을 역임한다. 이에 따라, Ofcom은 미디어 관련부처장(長)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연차보고서를 일차적으로 제출한다. 이후, 관련부처장관은 연차보고서 복사본(Copy)을 의회에 제출한다. 참고로, Ofcom 이사회(Board)는 위원장을 포함, 비상임 6인, 사무총장 포함 상

도의 이행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당해 연도 Ofcom의 활동 사항,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Ofcom의 재정 상태와 그 외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 당해 연도의 일반 의무(general duties)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 방식에 대한 요약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연차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Ofcom 또한 중장기적 계획 아래, 연초에 당해 연도의 주요 정책적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기술한다. 2007/08년의 연차보고서의 경우, 2007/8년 연간 계획(Annual Plan)에 따른 전략적 정책프레임아래 차후 3개년의 정책적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기재하고 있다. 이 때, 전략적 우선과제는 주파수(Spectrum)에 대한 시장기반 접근, 융합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촉진, 시민/소비자 권익보호, 플랫폼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공적인 산출물 전달, 규제 완화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최대화 등이다. 또한 Ofcom은 연차보고서에 기관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이력,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관, 상임/비상임 이사회(board/non-board committees)의 구성 및 역할, 위원회와 위원장의 책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fcom의 연차보고서는 동일한 챕터에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는 여타 연차보고서와 달리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여러 챕터에 분산시켜 기술하고 있다.

호주의 ACMA는 ‘2005년 호주 통신 및 미디어법’(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의 부문(section) 57과 ‘각 기관 연차보고서 발행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The Requirements for Annual Reports for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and FMA Act Bodies: PM&C에서 발간)에 의거하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5년 호주 통신 및 미디어법’(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의 부문(section) 57(연차보고서)은 연차보고서의 내각 제출, 연차보고서 안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하는 사항, 그리고 연차보고서의 의회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실(PM&C:

임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DCMS/BERR(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 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DCMS/BERR/위원장이 상의하여 임명한다.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에서 발간한 ‘각 기관 연차보고서 발행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The Requirements for Annual Reports for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and FMA Act Bodies)은 연차보고서의 제출기한, 목적, 필수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MA는 해당 회계 연도의 6월 30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부처 장관²⁾에게 당해 연도의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연차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회 개회일 15일내에 상하원의원들에게 배부할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는 각부 사무국장의 검토의견, 부서별 개괄, 성과보고, 운영현황과 책임, 재무보고서, 그 외의 의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단, 이 때 성과보고는 과정과 활동에 대한 묘사보다는 성과진척사항에 대한 평가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재정 보고는 ‘재정관리 및 회계에 관한 법률’(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의 부문 57에 의해 반드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차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두에 ACMA의 역할과 책무,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등 간략한 기관 소개를 기술하고 있다. 성과 보고 방식은 중장기적 전략계획에 맞춰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환경, 콘텐츠규제와 소비자 정보 문제, 운영 현황과 같이 이슈별로 구분하여 당해 연도의 규제현황 및 추후 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운영현황에서는 부동산, 재정 운영 현황은 물론 직원능력개발 프로그램운영과 같은 인적자원과 정보 관리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본문이 아닌 부록 부분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주식 변동사항, 현금흐름표, 예상치 못한 비용의 명세서, 주석, 감사보고서를 포함시키고 있다. 부록 부분에는 이외에도 사무실 정보, 각종 리스트, 문서 정보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탈리아 AGCOM의 연차보고서는 위원장 인사말이나 목차 없이 보고서를 시작하고 있으며, 대신 서두에 전 세계, 유럽 그리고 자국의 통신(communications)

2)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들이 행정부 각료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도 독립행정기구인 ACMA가 미디어 관련부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후 장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등 영국과 매우 유사한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다.

시장 현황에 대해 108페이지가량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의 관련 시장 분류(예, 유선시장, 무선시장, TV서비스 시장)에 따라 당해 연도 조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3장에서는 기관의 국제적 관계 및 국내 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간략하게 조직, 인사 구조, 윤리 위원회, 시스템, 예산과 같은 기관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FCC, Ofcom, ACMA, AGCOM의 최근 연차보고서를 특정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호주 ACMA의 연차보고서는 미국 FCC/영국 Ofcom의 연차보고서와 이탈리아 AGCOM의 연차보고서의 중간단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의 연차보고서는 이를 고려하여 벤치마킹할 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2008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성과분석

첫 번째는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으로, 이 부분은 다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의 소분류로 나누어지며, 이 각각에 대한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두 번째 대분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으로, 이 부분에서는 방송정책을 중심으로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의 다양성확대를 통한 국민문화 향상도모,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방송품질의 제고와 시청권 보장의 소분류로 나누어진다.

세 번째로 통신 및 주파수 정책 전반에 걸친 업무성과를 “이용자 편익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제목아래 살펴보았다. 이 부분의 소분류는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대분류 하에, 인터넷의 안전성과 건전성 제고,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등 보안, 네트워크 투자,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성과를 검토해 보았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연구로, 해외 방통 규제기구의 연차보고서를 검토함과 동시에,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해외 주요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연차보고서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FCC의 ‘성과 및 회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는 개정된 통신법에 의거하여 국내외 시장의 정책적인 문제, 위원회 업무 성과, 보유 인력과 시설의 적절성,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기금 내역 등, 그리고 새로운 입법의 잠재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Sec. 4).

둘째, 영국의 Ofcom은 ‘Ofcom 설치법’(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c. 11))과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c. 21-3-(10)))에 입각하여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Ofcom은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연초에 당해 연도의 우선적인 정책 과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성과 보고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기술한다. 또한 재정 관련 사항을 여러 장에 걸쳐 다각도로 보고하고 기관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셋째, 호주의 ACMA는 ‘2005년 호주 통신 및 미디어법’(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의 부문(section) 57과 ‘각 기관 연차보고서 발행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The Requirements for Annual Reports for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and FMA Act Bodies: PM&C에서 발간)에 입각하여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해당 법령들은 연차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필수요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CMA의 연차보고서는 성과보고서 FCC나 Ofcom과 달리 중장기적 계획이 아닌 이슈별로 당해 연도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본문이 아닌 부록부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같은 재정 보고, 사무실 정보, 각종 리스트 등을 수록하고 있다.

넷째, 이탈리아 AGCOM은 비교 대상 국가들의 연차보고서와 달리 서두에 위원장 인사말이나 목차 없이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세계 통신시장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AGCOM의 연차보고서는 성과보고에 있어 관련 시장 분류에 따라 당해 연도 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AGCOM의 연차보고서는 국제적 관계 및 국내 관련부처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주요국 연차보고서 검토결과 직년 년도 결산보고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추진 성과를 계량화된 수치로만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성과를 기술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방통위 정책성과의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결산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결산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의 성과분석은 2008년 7월에 발간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선진 방송 정착”, “이용자 편익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같은 대분류에 따라 진행되었다.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에 수록될 수 있는 정책성과들을 검토·정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의 바람직한 발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과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성과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2009년도 초에 발간될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서 론

각국의 규제기관들은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중앙행정기관도 관련 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 회계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 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공표해야 한다. 방송통신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각종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현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맞아 위원회 업무에 관한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심도 있는 사전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유수 기관의 연차보고서 및 FCC, Ofcom, ACMA, AGCOM 등 국외 주요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최근 연차보고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의 발간방향, 발간 형식, 주요 수록 내용 등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정책에 대한 정책성과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분야별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성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연차보고서에 수록될 2008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성과분석(안)을 도출하였다.

동 과제를 통해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실 있는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 방송·통신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 주요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연차보고서 사례

1. 미국 FCC

FCC는 개정된 통신법에 의해 직전 회계연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FCC의 연차보고서는 1999년 ‘연간 성과분석 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 2000년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Program Performance Report), 2004년 ‘성과 및 회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성과 및 회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는 개정된 통신법에 의거하여 국내외 시장의 정책적인 문제, 위원회 업무 성과, 보유 인력과 시설의 적절성,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기금 내역 등, 그리고 새로운 입법의 잠재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Sec. 4).

〈참조〉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법령 원문

- (k) The Commission shall make an annual report to Congress, copies of which shall be distributed as are other reports transmitted to Congress. Such reports shall contain--
- (1) such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by the Commission as may be considered of value in the determination of questions connected with the regulation of interstate and foreign wire and radio communication and radio transmission of energy;
 - (2) such information and data concerning the functioning of the Commission as will be of value to Congress in appraising the amount and character of the work and accomplishments of the Commission and the adequacy of its staff and equipment;

- (3) an itemized statement of all funds expended during the preceding year by the Commission, of the sources of such funds, and of the authority in this Act or elsewhere under which such expenditures were made; and
- (4) specific recommendations to Congress as to additional legislation which the Commission deems necessary or desirable, including all legislative proposals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또한 ‘1993년 정부기관 성과 및 결과 제출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GPRA)에 따라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은 전략계획서(strategic plan)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이때 전략계획서는 최소한 5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FCC는 2006년 회계 연도에 이전 전략계획(2003~2008)을 수정한 2006~2011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FCC는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지침에 입각하여 위원회의 연례성과계획을 포함한 성과 예산(performance budget)을 개발하고 연차보고서의 2장에 연례성과보고서를 통합시켜 GPRA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다.

FCC의 연차보고서의 내용은 매해 다양하며 대부분 위원회의 조직 등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한다. 여기에는 이전 년도에 변화된 사항들이 포함된다. 이 중 2006/07 회계 연도에 해당하는 <성과 및 회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의 연차보고서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차보고서 시작 부분에 19페이지 가량 기관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의 사명, 조직 구성, 전략적 목표, 전략, 미래 과제, 시스템 등이며,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부서현황만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ch. 1).

둘째, FCC는 국가 정보통신 시장의 우선 과제를 반영한 중장기적 계획에 세우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성과에 이를 기술하고 있다(ch. 2). 2006/07 연차보고서의 경우 지난 계획(2003~2008년)을 수정한 2006~2011년 중 장기 계획의 전략과 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기술하고 있는데, 주요 전략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참조〉 주요 전략 사업 분야

- ① 광대역(broadband)
- ② 경쟁
- ③ 주파수
- ④ 미디어
- ⑤ 공공의 안전 및 국가보안
- ⑥ FCC의 근대화

셋째, 53페이지 가량에 걸쳐 해당 회계 연도의 재정 상태와 감사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연결대차대조표, 순비용 통합제표(Consolidated Statement of Net Cost), 예산자원 결합제표(Combined Statement of Budgetary Resources), 보호활동 통합제표(Consolidated Statement of Custodial Activity) 등 주요 재무제표 및 주석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감사 보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당해 감사보고서 사본은 물론, 전년도 감사 결과 반영 현황, 당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참조〉 성과 및 회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06/07 요약

위원장 인사말

1. 운영에 대한 토론과 분석

- ① FCC개관
 - － FCC란?
 - － 사명
 - － 조직 구성
 - － 전략적 목표
 - － 전략과 지원
 - － 미래 과제
- ② 당해 회계 연도의 강조 사항: 성과/재정적 측면
- ③ 법적 준수사항, 시스템, 내부통제

2. 프로그램 성과: 2003~2011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 분야별 성과 정리

- 주요 전략사업분야
 - － 광대역(broadband)
 - － 경쟁
 - － 주파수
 - － 미디어
 - － 공공의 안전 및 국가보안
 - － FCC의 근대화

3.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 ① CFO 인사말
- ② 주요 재무제표
 - － 연결대차대조표
 - － 순비용 통합제표(Consolidated Statement of Net Cost)
 - － 예산자원 결합제표(Combined Statement of Budgetary Resources)
 - － 보호활동 통합제표(Consolidated Statement of Custodial Activity) 등
- ③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④ 추가 정보: 유예 보수(deferred maintenance), 예산자원
- ⑤ 감사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4. 기타

- ① 재무제표 감사 내용 요약
- ② 경영관리 보증(management assurance) 요약
- ③ 부적절한 지출정보에 관한 법률(IPIA) 보고서
- ④ OIG(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의 운영과제 요약
- ⑤ OIG(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의 운영과제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2. 영 국 Ofcom

영국의 Ofcom은 ‘Ofcom 설치법’(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c. 11))과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c. 21-3-(10)))에 입각하여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and Accounts)>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Ofcom 설치법’

(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c. 11))의 부칙 제12조(Schedule paragraph 12: annual report)는 Ofcom의 연차보고서 내용 및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회계 연도 종료 시점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장관(Secretary of state)³⁾에게 당해 연도에 이행 사항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12-(1))
- 모든 연차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함(12-(2))
 - (a) 당해 연도 Ofcom의 활동 사항 보고
 - (b) 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Ofcom의 재정 상태와 그 외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
- 장관은 의회(상하원)에 연차보고서를 제출

〈참조〉 연차보고서 내용 및 제출에 대한 규정 원문(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c. 11))

- 12 (1)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nd of each financial year, OFCOM shall prepare and send to the Secretary of State a report of the carrying out of their functions during that financial year.
- (2) Every report under this paragraph shall incorporate –
- (a) a report of OFCOM's proceedings during that year and
 - (b) such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inancial position of OFCOM, and to any other matters that he considers appropriate,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 (3)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lay a copy of every report sent to him under this paragraph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3)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며, 우리나라의 국회 상임위원장에 해당하는 의원이 소관 행정부처의 장을 역임한다. 이에 따라, Ofcom은 미디어 관련부처장(長)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CMS)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연차보고서를 일차적으로 제출한다. 이후, 관련부처장관은 연차보고서 복사본(Copy)을 의회에 제출한다. 참고로, Ofcom 이사회(Board)는 위원장을 포함, 비상임 6인, 사무총장 포함 상임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DCMS/BERR(비즈니스/기업/규제개혁부) 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DCMS/BERR/위원장이 상의하여 임명한다.

또한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c. 21-3-(10)))은 ‘Ofcom 설치법’(Office of Communications Act)의 부칙 제12조(Schedule paragraph 12: annual report)에 해당하는 모든 보고서는 당해 연도의 일반 의무(general duties)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 방식에 대한 요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fcom은 매회계 연도마다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and Accounts)>를 발간한다. FCC의 연차보고서의 성과보고와 마찬가지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and Accounts)>는 중장기적 계획 아래, 연초에 당해 연도의 주요 정책적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기술한다. 이에 따라 2007/08년의 연차보고서의 경우, 2007/8년 연간 계획(Annual Plan)에 따른 전략적 정책프레임아래 차후 3개년의 정책적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기재하고 있다. 2007/8의 핵심 사업 분야는 ① 주파수(Spectrum)에 대한 시장기반 접근, ② 융합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촉진, ③ 시민/소비자 권익보호, ④ 플랫폼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공적인 산출물 전달, ⑤ 규제 완화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 ⑥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최대화이다.

또한 Ofcom은 연차보고서에 기관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위원회 구성원 이력, ②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관, ③ 상임/비상임 이사회(board/non-board committees)의 구성 및 역할, ④ 위원회와 위원장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Ofcom의 연차보고서의 마지막 특징은 동일한 챕터에 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는 여타 보고서와 달리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여러 챕터에 분산시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3장 운영, 재정 검토에서 재정 검토 파트를 통해 관련 법규와 재정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4장 ‘회계 및 지배구조 보고서’(Statement of Accounts and Corporate Governance)에서 급여보고서를 통해 관련 자문인, 정책, 위원회 그리고 급여보고서 및 주석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 결산(Accounts): 결산과 관련하여 급여현황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증명서, 관련 재무제표 및 주석 등을 기재하고 있다.

1. 서 론

① 위원장 인사말

② 사무총장 리포트

－ 경쟁촉진, 공익보장(Securing Public Interest), 소비자 권익보호, Ofcom의 효율적 운영, 2008년 주요 사업(Annual Plan)

2. 핵심 사업 분야: 연초에 제시한 핵심추진과제(사업전략-연간계획(Annual Plan))에 맞춰 기술

① 주파수(Spectrum)에 대한 시장기반 접근: 주파수 규제정책 등

② 융합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촉진: NGN, 유료 TV 시장, BT의 사업현황 등

③ 시민/소비자 권익보호: 모바일 허위판매 단속, 번호이동 등

④ 플랫폼과 서비스의 융합, 공적인 산출물 전달: 방송의 신뢰성 회복, 라디오부문 개혁 등

⑤ 규제 완화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

⑥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최대화: 유럽 구조 검토보고서(European Framework Review) 등에서의 Ofcom 활동 사항

3. 운영, 재정 검토

① 성과 및 평가: Ofcom이 출간한 각종 보고서(통신시장 보고서(The Communications Market) 등)에 대한 개요,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Ofcom의 평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의견수렴(consultation)설계와 리스트 기술

② 통계 데이터: 각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③ 재정 성과: 잉여금, 관세, 고용 현황, 연금,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등 재정 상황 정리

4. 회계 및 지배구조 제표(Statement of Accounts and Corporate Governance)

○ 위원회 구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급여 등에 대한 보고

5. 결산(Accounts)

○ 감사보고서, 수입과 지출 결산(Income and Expenditure),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 기술

3. 호주 ACMA

ACMA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2005년 호주 통신 및 미디어법’(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 제57조(section)와 ‘각 기관 연차보고서 발행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The Requirements for Annual Reports for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and FMA Act Bodies: PM&C에서 발간)을 반드시 충족시켜야한다.

‘2005년 호주 통신 및 미디어법’(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 제57조는 연차보고서의 행정부처 제출, 연차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그리고 연차보고서의 의회 제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MA는 해당 회계 연도의 6월 30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처의 장관(Minister of The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⁴⁾에게 당해 연도의 운영사항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57-(1)), 장관은 연차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의회 개회일 15일내에 상하원의원들에게 배부할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57-(3))

57 Annual report

Annual report to be given to Minister

- (1) The ACMA must,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30 June in each financial year, prepare and give to the Minister a report(an **annual report**) on the ACMA's operations during that financial year.

Annual report to be tabled in Parliament

- (3) The Minister must cause a copy of each annual report to be tabled in each House of the Parliament within 15 sitting days of that House after the day on which the Minister receives the report.

총리실(PM&C: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에서 발간한

4)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들이 행정부 각료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도 독립행정기구인 ACMA가 미디어 관련부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후 장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다.

‘각 기관 연차보고서 발행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The Requirements for Annual Reports for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and FMA Act Bodies)은 연차보고서의 제출기한, 목적, 필수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필수요건과 관련하여, 성과 보고, 재정 보고 시 의무적으로 포함할 내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요건에 따라, 연차보고서는 각부 사무국장의 검토의견, 부서별 개괄, 성과보고, 운영현황과 책임, 재무보고서, 그 외의 의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8-(1)). 단, 성과보고는 과정과 활동에 대한 묘사보다는 성과 진척사항에 대한 평가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11-(1)), 재정 보고는 ‘재정관리 및 회계에 관한 법률’(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1997))의 부문 57에 의해 반드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ACMA의 연차보고서는 FCC와 동일하게 서두에 ACMA의 역할과 책무,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등 간략한 기관 소개를 기술하고 있다. 성과 보고 방식은 FCC나 Ofcom과 달리 중장기적 전략계획에 맞춰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슈별로 구분하여 당해 연도의 규제현황 및 추후 계획 등을 기술하고 있다. 2006/07년 연차보고서의 경우에는 크게 규제 환경, 콘텐츠규제와 소비자 정보 문제, 운영현황으로 구분하여 당해 연도의 규제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운영현황에서는 부동산, 재정 운영 현황은 물론 직원능력개발 프로그램운영과 같은 인적 자원과 정보 관리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FCC나 Ofcom과 달리 본문이 아닌 부록 부분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주식 변동사항, 현금흐름표, 예상치 못한 비용의 명세서, 주식, 감사보고서를 포함시키고 있다. 부록 부분에는 이외에도 사무실 정보, 각종 리스트, 문서 정보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참조〉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2006/07 요약

위원장 인사말

1. ACMA 소개

- 역할과 책무, 구조(권한, 조직구조), 지배구조(corporate structure)

2. 규제 환경: 규제 이슈별 서술

- ① 규제기관으로써 역할
- ② 소유권과 통제: 미디어 개혁, 소유권과 통제 조항에 준수, 지역차원 콘텐츠 규제 등
- ③ 디지털 방송: 디지털 텔레비전(Digital Action Plan, 조사연구), 디지털 라디오(서비스 시연 등)
- ④ 주파수 체계: 무선통신의 주파수체계에 대한 컨설팅업체 분석, 주파수대역 규제 등
- ⑤ 배분과 라이선스: 무선통신, 주파수 라이선스 등
- ⑥ 통신서비스 번호 할당: 번호체계 관련 행정조치, IP기반 서비스 번호할당, 번호이동 규제 등
- ⑦ 수익과 요금: 번호할당요금, 번호 경매, 방송 라이선스 요금, 주파수 라이선스 요금 등
- ⑧ 기술적인 규제: 기술 표준, 통신서비스 표준, 통신서비스 인프라시설 규제, 무선통신서비스 표준관련 규제 개선 사항 등
- ⑨ 준수 여부 조사: 무선통신/통신/방송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불법 양방향 도박서비스 등
- ⑩ 국내 관심 이슈: 법률 강화를 위한 조치, 긴급호서비스 관리 등
- ⑪ 국제적인 문제: ACMA가 규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강화전략 기술

3. 콘텐츠 규제와 소비자 정보

- 규제 도구(산업 법령), 콘텐츠 규제(Anti-siphoning, Anti-hoarding 등), 스팸방지 활동, 고객 보호(보편적서비스의무, 디지털 데이터서비스 의무 등), 공동체 인식(온라인 안전 정보 안내제품, 스팸방지캠페인 활동 등)

4. 운영 현황

- 인사 조직(고용 협정, 성과급, 직업 훈련 현황 등), 정보 관리, 지배 구조,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발표, 발간물), 재정 관리, 부동산 관리

부 록

- 기관에 대한 추가 정보: 사무실, 위원회, 직원 정보
- 추가 자료: 라이선스 목록, 프로그램과 콘텐츠 목록, 방송에 대한 불만사항 목록, 법령 목록, 신고 및 증서 관련 문서 정보, 규제 영향 평가 등
- 재정 관련 정보: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주식 변동사항, 현금흐름표, 예상치 못한 비용의 명세서, 주식 등)

용어 설명/Index

4. 이탈리아 AGCOM

AGCOM은 매 회계년마다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한다. AGCOM의 2006/07년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FCC, Ofcom, ACMA와 달리 위원장 인사말이나 목차 없이 연차보고서를 시작하고 있으며, 대신 서두에 전 세계, 유럽 그리고 자국의 통신(communications) 시장 현황에 대해 108페이지가량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때, 이슈별 분류가 아닌 유선시장, 무선시장, TV서비스 시장과 같은 관련 시장 분류에 따라 각각의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AGCOM의 연차보고서는 FCC나 Ofcom과 같이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핵심 사업 분류로 당해 연도 성과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관련 시장 분류(예. 유선시장, 무선시장, TV서비스 시장)에 따라 당해 연도 조치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기관의 국제적 관계 및 국내 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역할과 양국 관계 현황(예. MOU), 자국의 국가 기관, 위원회 그리고 대학 및 연구 기관들과의 관계 등에 관한 보고이다. 4장에서는 간략하게 기관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조직, 인사 구조, 윤리 위원회, 시스템, 예산 등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룬다.

<참조> Annual Report 2006 요약

1. 전 세계, 유럽, 그리고 이탈리아의 통신시장(communications) 현황

- ① 전 세계/유럽의 시장 현황: 통신서비스 시장, Audiovisual 시장 현황
- ② 국내(이탈리아)현황: 통신서비스 시장, TV서비스, 라디오, 출판업, 광고, 규제 개선

2. AGCOM의 조치 사항: 규제기관의 관련 시장 분류별로 당해 연도 조치 사항에 대해 기술

- ① 전기통신시장분석
- ② 유선 시장: 감사, 번호 할당 등 규제 현황
- ③ 무선시장: 잠금장치(SIM Lock), 번호이동, Mobile TV서비스 규제 현황
- ④ 인터넷과 광대역(Broadband): 초고속인터넷(ADSL Broadband), VoIP서비스 규제 현황

- ⑤ 통신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인가 조치와 사업자간의 분쟁 해결
- ⑥ TV서비스: 디지털지상파TV, 선호도 조사(Rating survey) 방법(예> 시청률), 위성 방송 허가 등 규제
- ⑦ 광고: TV, 라디오 광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광고, 오해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한 규제
- ⑧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
- ⑨ 어린이 보호 조치
- ⑩ The Register of Communications Operators(ROC)
- ⑪ 소비자 및 사용자의 보호: 사용자와 통신사업자의 분쟁 해결, 사업자 불만사항 관리(USG) 등
- ⑫ 사법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 ⑬ 이해관계 충돌 해결
- ⑭ 방송시간의 균등배분(par condicio)과 정보다원성 활성화

3. 타 기관과의 관계(AGCOM's Institutional Relations)

- 국제/국가 기관,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지역통신위원회,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

4. 조직 구조(Governance Structure)

- 조직 구조 및 인사 조직, 윤리 위원회, 통제 시스템, 예산, 문서 제공 서비스, 공식적인 정보(official information)와 웹사이트 기술

약어 정리

5. 주요국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이상으로 주요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 연차보고서의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FCC, Ofcom, ACMA, AGCOM의 최근 연차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연차보고서의 특징과 내용 요약을 바탕으로 각국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이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 중장기적 계획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보고하는가?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기관의 조직 구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시장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그 외 정보: 분량 및 특이 사항

〈표 II - 1〉 각국 연차보고서의 구성 비교

항목	미국 FCC	영국 Ofcom	호주 AMCA	이탈리아 AGCOM
• 중장기적 계획아래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보고하는가?	○	○	× (이슈별로 당해 연도의 규제 현황보고)	× (관련 시장별 당해 연도 조치 사항 기술)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기재하고 있는가?	○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전년도 감사 결과 반영 현황도 포함)	○	○ (단, 본문이 아닌 부록에 기재함)	× (간략한 예산보고만 있음)
• 기관의 조직 구조,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가?	○ (개괄적 소개와 간략한 부서현황)	○ (상세한 지배 구조 보고)	○ (부록에 추가 정보 포함)	○ (간단한 지배 구조 보고)
• 시장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	×	○ (전 세계, 유럽, 자국 현황 기술)
•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	×	×	○ (국내외 기관과의 관계 기술)
• 분량	157페이지	93페이지	208페이지	258페이지
• 기타 특이 항목	-	- 급여보고서	- 방대한 부록 - 용어 설명 - Index	- 약어 설명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연차보고서는 회계연도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성과를 계량화된 수치 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성과를 기술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방통위 정책성과의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모

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산보고서의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의 결산 보고서 제출 방식의 차이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결산 현황을 간단히 약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2008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성과분석⁵⁾

1.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및 통합법체계 마련

가) 현황 및 배경

(1) 방송통신 관련 법 통합의 필요성 제기

방송과 통신 관련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 새로운 융합 환경 대응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 통신 분야에서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인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감안할 때, 방송과 통신을 엄격히 구분하는 현행 법·제도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방송통신 관련 기본개념,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진흥, 재난관리 등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이 방송·통신관련 법령에 별개로 규정되면서 일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관련 법 분산은 관련 부처 업무의 혼선 및 이해의 상충과 같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은 조문별로 담당부처가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등으로 분리되어 국민들의 법령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부처간 업무수행에 일부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주체(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동 기금을 타 기관(지경부)이 운용하는 등 조성 주

5) 이 장의 내용은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분석검토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남심 책임연구원, 오정숙 주임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김성훈 팀장, 강릉대학교 고민수 교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변화성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 성동규 교수, 한국전파진흥원 이승훈 팀장,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윤수 단장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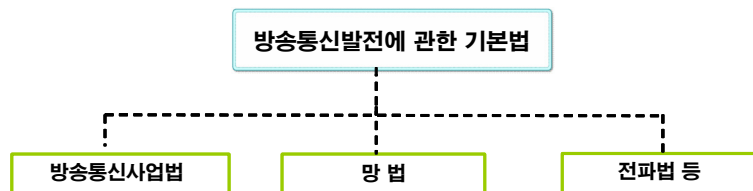
체와 운영 주체의 불일치로 인해 효율적 자원 집행에도 제한이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통합법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 통합법 체계 구축 완료를 목표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 의결(8월), 기본법 초안에 대한 부처 협의(9월),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10월~11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11월 21일), 법제처 심사(11월), 국회 제출(12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 - 1〉 제정안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방송통신의 정의, 목적, 권익보호, 경쟁활성화 등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과 방송통신발전에 필요한 각종 정책수단을 규정 ○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내용 중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통합·재구성 ○ 인허가, 사업자 분류, 금지행위 등 방송통신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방송통신사업법’에 반영 하고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제외 ○ 부처간 논란이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반 강화 ○ 현 방송통신 관련 법률들을 「기본법+개별법」 체계로 통합하되, 기본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개별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 우선 추진 ○ 그외 개별법은 추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별도 법률로 존속 또는 기본법·사업법으로의 편입 여부 검토
주요 내용	○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술 기준,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7장 52조, 부칙 9조로 구성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까지 단계적 통합법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그 일환

으로 개별법인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을 추진, 방송·통신 구분 없이 동일 서비스의 경우 동일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의 서비스 분류, 사업자 인허가, 경쟁촉진,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진흥·규제사항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통합)사업법이 제정될 경우, 2010년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방송법 등은 통합사업법으로 흡수될 것이다. 다만, 전파법, 망법 등 그 외 법률들은 2010년 이후, 방송통신기본법 또는 방송통신사업법으로의 편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배경

방송통신 분야의 재원 분리와 관련 세원의 정확한 세출 미비는 방송과 통신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재원이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분리되어 그 용도가 각각 방송과 정보통신으로 한정되어 방송통신 통합 정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 종합 발전을 위해 관련 세원의 정확한 세출에 대한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기금의 경우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조성되는 재원이 제조업 중심의 상용기술 개발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프라구축, 디지털방송전환, 주파수 회수 재배치 손실보상 등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방송발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08~'12) 수립('08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정과제(방송통신경쟁력 강화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기금지원 사업들'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1월에 방송발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08~'12)을 수립했다. 동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디지털 융합 촉진 등에 연평균 4.6%가 증액된 금액을 투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중장기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통신분야는 BcN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기반구축, 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전파진흥 등에 연평균 3.2% 증가된 2,862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방송분야는 향후 FTA 후속조치에 따른 방송 시장 개방, 디지털방송 전환, 방송통신융합 R&D 등에 연평균 5.9% 증가된 2,822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

〈표 III - 2〉 '08~'12년 중기재정 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연평균 증가율
계	5,137	5,704	5,650	5,790	6,138	4.6%
통신분야	2,613	2,722	2,989	3,025	2,959	3.2%
방송분야	2,524	2,982	2,661	2,765	3,179	5.9%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 09년 방송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08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6월 '09년 방송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09년 세입·세출안 마련에 대한 것으로 '09년 세입은 일반회계 3,845억원 및 방송발전기금 2,913억원을 합산한 총 6,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 '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704억원으로 '09년도 567억원(11.0%)이 증액되었다.

〈표 III - 3〉 '09년 주요 예산 운용 계획(안)

(단위: 억원)

주요 사업 분야	'08	'09	증감율
○ 방송통신융합 촉진과 디지털전환 - IPTV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영어자막 시범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방송 전환 홍보 및 수신환경 개선, 절대 난시청해소 추진	636	834	31.1%
○ 방송통신서비스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 - 교육방송, 국제방송, 국악방송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통신사업자간 서비스품질 경쟁력 평가시스템 구축	976	881	△9.7%

주요 사업 분야	'08	'09	증감율
○ 네트워크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강화 - 광대역통합망(BcN)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망 구축을 지원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개인정보 삭제, 본인 확인제도 확대 추진	600	603	0.5%
○ 이용자권익증진과 공정경쟁 환경조성 - 장애인의 방송시청 보조기기 보급,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속 지원하고 방송통신시장 환경 조사, 이용자 피해예방을 신규 지원	248	243	△2.0%
○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과 해외진출지원 - 주파수 효율화를 위해 지상파DTV의 주파수재배치(다중망 → 분산망), WiBro, DMB, IPTV 등의 해외 시연과 개도국 방송통신정책을 지원	774	586	△24.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통신 발전 기금 설치 추진('08년 8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 법 제정안 중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제정안 30조).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에 방송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을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전파사용료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전파법(제 67조)상 용도가 전파관리 및 진흥에 특정되어 방송발전기금 재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진흥기금 중 연구개발 출연금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였다.

〔그림 Ⅲ - 1〕 개편 현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기본법 초안에 대한 부처 협의는 9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10월~11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11월 21일), 법제처 심사(11월), 국회 제출(12월)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의 공공성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 징수 체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3) 방송통신 분야 R&D 재원확보 및 추진 체계 재정립

가) 현황 및 배경

(1) 방송통신 R&D 종합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정부조직 개편('08. 2.)으로 방송통신 R&D정책은 방통위의 서비스 분야 R&D와 지경부의 ICT 제조업 분야 R&D로 분리되어 추진하게 됨에 따라 R&D 성과가 서비스도입, 상용화, 산업화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추진·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ICT환경 전반의 변화는 ICT 생태계 가치사슬의 정점에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ICT분야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관련 기기·인프라의 동반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함으로써 ICT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촉발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2) 융합 환경에 대응한 방송통신 분야 중장기 R&D 프로젝트 발굴 필요

방송통신 융합의 진전으로 인한 급속한 ICT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ICT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이며,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융합인프라, 차세대 이동통신, 전파·위성 등 방송통신 분야 핵심 원천·요소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09년 R&D 재원 확보('08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금 배분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원 배분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파·위성·방송 등 고유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으로 추진하되, 서비스·기기간 연계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파자원 개발, 디지털방송 전송 효율화 등 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개발에 단독 지원('08년 380억 → '09년 535억원)하고 차세대 이동통신·광대역통합망(BcN),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분야 핵심원천 기술개발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지원('08년 1,551억원 → '09년 1,741억원)하는 등 방송통신 핵심원천기술 개발('08년 1,931억원 → '09년 2,276억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표준기술력 향상을 지원('08년 229억원 → '09년 217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파·위성 분야 표준개발, 표준화 제도·기획, 국제 표준 전문가 활동 및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08년 150억 → '09년 134억원)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BcN,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분야의 표준개발에 지식경제부와 공동 지원('08년 79억원 → '09년 83억원)할 예정이다.

〈표 Ⅲ - 4〉 '09년 방송통신 R&D예산(안)

(단위: 억원)

구 분	'08예산	'09예산안	증감액
○ 방송통신핵심원천기술개발	1,931	2,276	345
- 전파·방송·위성 등 기술	380	535	155
- 이동통신·BcN·방송 등 기술	(1,551)	(1,741)	(190)
○ 방송통신표준기술력 향상	229	217	△12
- 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150	134	△16
- 방통위·지경부 표준 개발	(79)	(83)	(4)
합 계	2,160 (1,630)	2,493 (1,824)	333 (194)

주: () 방통위·지경부 공동사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 분야 R&D 추진체계 정립('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발굴 및 활성화 등 독자적인 R&D 기획·관리·평가와 R&D정책과 R&D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의 일환으로 미래 방송통신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기술 수준 파악 및 발전 추세를 전

망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자문회의’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방송통신 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방송통신 중장기 R&D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다) 향후 계획

분야별 R&D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자문,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 R&D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

1) IPTV 상용 서비스 활성화

가) 현황 및 배경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터넷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제도 미비로 선진국 대비 IPTV 상용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IPTV 도입과는 5년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30여개 국가에서 200여개 사업자들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가입자수는 '07년 말 기준으로 1,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08년 8월 IPTV 관련 법제도 완료 전까지 VoD 위주의 pre-IP IPTV 형태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08년 7월말 기준으로 152만 가입자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 자문을 위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06. 7월~'08. 3월)되었으며, 방송위와 정통부간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 합의('06. 8월) 및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을 도모하였다('06. 11~12월). 또한 국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의결하고('07. 12. 28), 법률 공포('08. 1. 17) 및 시행('08. 4. 17)을 실시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08년 8월)

2008년 5월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5월 9일)하였으며, 2008년 5월에는 시행령(안)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식 의견제도를 도입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식의견게시” 코너를 통해 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사업자·단체·협회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23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8년 6월 27일,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6월 27일)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IPTV 허가·회계·설비 고시를 제정하였다.

(2) IPTV 사업체제 마련('08년 8월~9월)

2008년 8월 7일, IPTV 제공사업자를 9월 초 선정한다는 내용의 「IPTV 제공사업 허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참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제공사업 허가 기본 계획안 주요 내용

허가심사 절차	○ 1차심사: 허가 신청 법인이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49% 이내) 등 허가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적격 심사 ○ 2차심사: 적격 심사를 통과한 허가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하여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등 각분야 전문가 10~15인으로 구성
------------	---

위의 계획에 따라, 2008년 9월에는 IPTV 제공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08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오픈아이피티브이,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KT 등 4개 허가신청법인의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심사,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사 절차를 완료, 9월 8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KT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08년 9월 중순부터 상용서비스 개시 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KT, LG데이

콤, 하나로텔레콤 등 IPTV 제공사업자별로 100~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방송 프로그램 중심의 시험서비스를 추진하였다. 또한 IPTV 콘텐츠 사업자 신고·승인·등록을 추진하여, IPTV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8월 26일부터 언제든지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IPTV 공공시범서비스 수행('08년 7월~12월)

사회복지, 교육, 공공정보, 민원처리 등 공공분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31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자로 KT컨소시엄, 하나로컨소시엄, LG데이콤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총 30억원의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IPTV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발, 2008년 12월 600여 시범가구에 선보일 예정이다.

(4) IPTV 활성화 민관협의회 구성('08년 11월)

IPTV 산업활성화를 위해, 2008년 11월 관련 전문가·사업자의 협조를 도출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참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IPTV 제공사업자, IPTV 콘텐츠사업자 등의 임원급이며,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된다. 민관협의회 주요업무는 IPTV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 향후 계획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 기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 방안 마련

가) 현황 및 배경

광대역 네트워크의 발전과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방송시장의 경계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신규 융합서비스의 출현이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 100개 이상의 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외에 3개의 IPTV 사업자가 새로이 다채널 유료방송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적 방송시장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변화로 기존의 규제정책의 핵심가치였던 공익성 외에 공정경쟁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방송의 산업화와 방송·통신의 융합은 공익성 개념에 근거한 방송 규제철학, 규제기관 및 규제 방식에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IPTV 공정경쟁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공정경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사전적 규제를 위해, 공정경쟁, 설비 동등제공, 콘텐츠동등접근, 금지행위 규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평가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평가위원회의 설치·조직·업무·위원의 선임방법·위원의 임기 및 신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부터 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규제 개선('08년 11월~)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시장 내 비대칭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였다. IPTV 제공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대해 IPTV 법 제17조(금지행위)에 따라 조사·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매체 간 공정경쟁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현 방송통신 규제체계에서 탈

피하여 전체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 규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IPTV 제공사업에서의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공정경쟁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3)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가) 현황 및 배경

(1) 방송통신 콘텐츠 환경 변화

방송의 디지털 완료, 광대역 서비스 보편화,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등장 및 압축·저장·전송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방송통신 네트워크 향상, 그리고 주문형, 쌍방향 콘텐츠 활성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활성화되며,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와 참여의 수단으로서의 방송통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현황 및 전망

IPTV, 디지털 TV 등 세계 주요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13.4%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장기 성장 가능성에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표 III-5〉 전 세계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전망('06~'12)

(단위: 백만불)

주요 시장전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CAGR
전체	115,925	131,620	149,575	172,773	195,272	221,552	246,776	13.4%
디지털TV	66,325	76,100	86,418	99,091	109,400	122,006	133,997	12.0%
IPTV	2,113	3,495	6,096	11,354	17,375	24,611	31,396	55.1%
DVD	41,692	45,191	48,749	52,648	57,449	62,519	67,599	8.4%
애니메이션	5,795	6,834	8,312	9,680	11,048	12,416	13,784	15.1%

자료: PWC(2007), MRG(2007), Screen Digest(2007), Digital Vector(2007), KIPA(2007)

(3)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문제점

국내의 경우, 콘텐츠의 제작, 유통, 활용에 이르는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가치 사슬의 선순환 발전구조가 미비한 실정이다. 콘텐츠제작 부문의 영세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부족해 디지털 다플랫폼 환경에서 콘텐츠 제작 인프라가 취약하며, 유통·인력·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도 미흡한 상황이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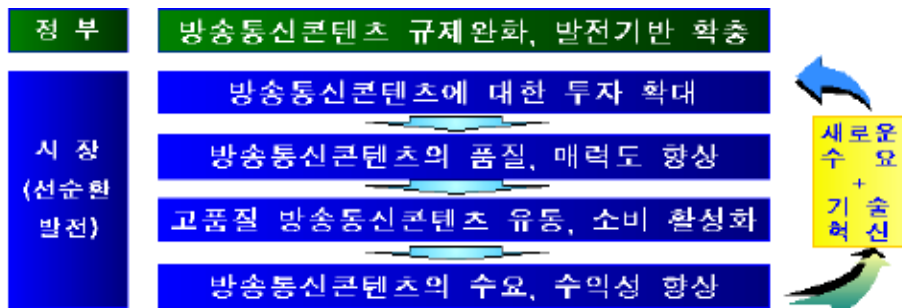
(1) '08년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08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일환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지원(224억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43억원)에 총 267억 원을 지원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직접 제작 지원(143억원), 프로그램제작비 용자사업(20억원), 현업 방송인과 방송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연수교육사업(10억원), 해외한국어방송 콘텐츠 지원 관련 사업(20억원), 콘텐츠 관련 국제교류행사(25억원)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연구사업의 경우, 융합시대의 방송·통신정책 비전 제시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정책연구사업과 저술발간·세미나 등 사업에 각각 37억원과 6억원을 지원하였다.

(2)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진흥계획 수립('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방송콘텐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Ⅲ - 2] 방송통신 콘텐츠 종합적인 진흥계획 구현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시스템 구축 추진

2008년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8년 5억 원을 투입해 웹서버와 저장장치, 콘텐츠 관리시스템, 변환/검색 기능 등이 포함된 기본시스템을 갖추고, 향후 5년간

15억 이상을 들여 방송콘텐츠 유통 지원을 위한 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방송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10~'12)하여 HD급 고품질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제공될 수 없는 공공·공익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08년 143억원, '09년 175억원)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콘텐츠의 시장동향, 인력수요 전망을 기초로 종합적인 방송통신 콘텐츠 인력양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1)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정

가) 현황 및 배경

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서비스의 고도화와 새로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작환경은 물론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제작설비와 송·중계시설, 또한 수신 장비의 대대적인 교체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새로운 방송기기 시장의 형성과 확대를 의미하며, 또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이나 미들웨어의 구축, 수많은 채널에 공급해야 할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 각종 데이터 및 쌍방향 서비스 등의 새로운 시장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미 여러 나라들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기존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중이며,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2001년 말 가장 먼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 시행령(안)을 거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세부사항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운영, 홍보 등의 필요

한 조치, 저소득층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사업 추진 목표, 내용, 기간, 재원계획 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및 수립절차를 정하였다(안 제5조).

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는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 운영하며(안 제6조~제10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 등을 심의한다(안 제11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청자 지원조치 및 디지털 추진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2조~14조).

또한 디지털튜너 내장, 안내문 부착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안 제15조),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사항은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기, 저소득층 시청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다) 향후 계획

디지털 전환 관련 법률의 중요성을 감안,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2) 디지털방송 전환 용자사업 시행

가) 현황 및 배경

각 국가별로 기존의 아날로그 지상파TV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방송사들이 비디오/오디오 규격과 그러한 신호의 압축 기술 규격, 디지털 신호의 패킷 전송을 위한 다중화방식, 전송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디지털 방송규격으로

자체표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이 이루어지기까지 각 방송사들은 비디오/오디오 규격과 그러한 신호의 압축 기술 규격, 디지털 신호의 패킷 전송을 위한 다중화방식, 전송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디지털방송 시행을 통해 각종 방송 관련 기기 및 장비 시장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및 콘텐츠 수요가 폭증할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디지털 방송장비와 각종 콘텐츠 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및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크게 앞선 선진국의 방송 장비 업체나 영상 소프트 제작자들의 시장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금력이 취약한 방송사업자들에게 융자 지원을 통하여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 계획을 결정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

위원회는 디지털방송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 계획(안)을 결정하였다. 계획(안)의 주요 목적은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SO융자 지원을 통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 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의 규모는 총 140억에 이른다.

〈표 Ⅲ - 6〉 2008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사업 계획(안)세부사항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한도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라디오, 종교방송 포함)	○ 디지털제작 · 편집시설, 송 · 중계시설 등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시설 · 장비	1사당 20억원 이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 디지털H/E, 디지털제작 · 송출시설, 셋탑박스 등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시설 · 장비 (전송망구축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 디지털제작 · 편집시설, 송출시설 등 디지털방송전환 관련 시설 · 장비	1사당 10억원 이내

이에 따라 대출 금리는 전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0.5%P(변동)이며, 용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1개 사 당 한도 내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 전체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용자사업 지원심사를 위해 외부 방송관련 전문가 및 회계·법률가 등 총 7인 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하고, 자금 소진 시 까 지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 하며 매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사업 자 선정 및 지원액을 확정기로 했다. 또한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실사, 완료보고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집행의 투명성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다) 향후 계획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디지털 방송 수신기와 셋톱박스 등 관련 기기 시장과 영상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 디지털 방송 조기도입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증가와 대규모 신규 고용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1) 방송통신 전략품목 해외진출 지원

가) 현황 및 배경

WiBro, IPTV, DMB 등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환경이 성숙되고 있어⁶⁾ 시장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 방송통신 시장에 있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2008년 위원회는 로드쇼 개최 및 타당성 조사, 파일럿 프로그램 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08년 상반기/하반기). 2008년 태국(3월 19일~20일), 터키(7월 1일), 우즈베키스탄(10월 17일), 브루나이(11월 6일), 프랑스(11월 19일), 일본(12월

6) WiBro 세계 가입자수는 2012년 13천만명(WiMAX Forum '08. 8), IPTV는 2012년 9천만 명(MRG '08. 3), Mobile TV(DMB 포함)는 2010년 48천만명(Gartner, '08. 3) 예상된다.

등에서 로드쇼 8회 개최하였으며, WiBro 분야는 태국, 터키, 브루나이에서, IPTV 분야는 베트남, 전파관리시스템 분야는 인도네시아에서 타당성 조사 및 파일럿 프로그램 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

〈표 III - 7〉 '08년 타당성조사 및 파일럿프로그램 협력사업 현황

세부사업	연계사업	협력대상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협력사업	터키	터키 주요 기업 WiBro 도입 협력사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파관리시스템 현대화 협력사업
파일럿프로그램 (Pilot Program) 협력사업	태국	태국 WiBro 기술테스트 협력사업
	베트남	베트남 Viettel IPTV 기술테스트 협력사업
	브루나이	브루나이 WiBro 기술테스트 협력사업

다) 향후 계획(Vision)

WiBro, DMB, IPTV 등의 국제표준화를 확대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시스템 업체들의 장기적 수출시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도모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반드시 개척해야할 미래 교역확대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술/서비스가 선점되도록 해외로드쇼 및 정부 간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의 안정적 수출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2) 글로벌 IT 협력강화 및 인프라 구축

가) 현황 및 배경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및 유럽(EU)과 첨단 IT 서비스·기술 공동연구, 표준화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우리 방송통신 서비스 및 IT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한·호·뉴(KANZ) 브로드밴드 정상회담 개최(6. 19~20, 코엑스)

KANZ 브로드밴드 정상회담은 'New Service for the Digital Economy'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장관급 및 정부, 연구기관, 업

체 관계자 약 300여 명이였다. 브로드밴드 관련 분야에서의 3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3국 대표의 개막 연설 및 각 국 간 양자회담, 방송통신 관련 정책·기술·산업동향 등에 관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방송통신 관련 정책 교류 및 ICT 기업간 협력을 증대하여 응용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실제 기술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 입안 및 민간 기업 간 교류 확장에 기여하였다.

(2) 제1차 한-EU ICT 포럼 개최(6. 16~17, 코엑스)

한-EU ICT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교류와 협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양국 국제 공동연구 상호 참여 및 기업 간 협력분야 도출 등, 유럽 선진국의 IT R&D 정책 및 전략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IT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정부, 연구소, 산업계, 학계 등 약 300여명으로, 포럼은 Technical Visits, 협력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졌다. 포럼을 통해, 한-EU ICT 분야 과학기술인 간 교류의 장 마련, 공동 연구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융합기술, 보안 분야 등에 대해 추가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술 표준화를 위한 양국 협력 체계 관련 공조, FP 및 공동 연구프로그램, 연구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한-EU 정책도 공유하였다.

(3) 글로벌 IT 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무대에서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로써 지역별 협력체계 및 국가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08년 4월에는 MIP TV 2008 참가를 통한 마켓채널 발굴, 프랑스 방송위원회(CSA)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통신 개발센터를 방문('08. 5, 중국 북경)하고, 한·터키 ICT 협력단 파견을 통하여 협력 세미나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08. 5)했다.

동남아 지역 통신분야 협력확대('08. 7, 베트남, 말레이시아), ASEAN + KOREA 4 TELMIN 및 TELSOM 참가 지원('08. 8, 인도네시아 발리), UAE 방송협력협정 협의 및 브루나이 차관급 회의 지원('08. 11, UAE, 브루나이), 태국 통신위원회 방문단 협력지원('08. 11, 한국), 헝가리 방송통신 협력에 관한 MOU 체결 기반조성 지원('08. 11,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도 실시하였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부 간 협력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역별 주요국가와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를 통한 협력의제 발굴, 협력사업 추진, 국제표준화 공조, 주요정책교류 등 정부간 협력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ast Asia(한·중·일)·대양주(한·호주·뉴질랜드) 방송통신 정상회담 개최 및 참가 그리고 고위급 정부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3) 방송통신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가) 현황 및 배경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인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정책·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연구 분석을 통한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해외 현지 규제 및 경쟁사 동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 활동 강화 및 효율적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① 대외경제정책연구원('07. 1월, 428개 진출기업 회신)

○ 해외진출기업 서비스 이용현황

- 해외진출정보제공(25.2%), 컨설팅서비스(20.9%), 마케팅지원(12.3%), 현지애로해소 지원(9.0%), 금융지원(7.2%), 세제지원(5.5%), 외교적 지원(2.5%), 인력양성지원(2.3%), 입지지원(2.2%), 기타(2.8%)

② 대외경제정책연구원('06. 10월, 100개 중소기업 회신)

- 애로사항: 정보습득(21.7%), 현지화(20.1%), 투자결정(12.4%), 금융지원(10.8%) 등

③ KOTRA('06. 7~8월, 553개 중국투자기업 회신)

- 정부지원 요청사항: 정보제공(19.9%), 금융지원(16.3%), 애로사항 정부 건의(15.8%), 상설투자자문센터 운영(11.4%), 바이어정보 제공(8.6%), 교육(8.0%) 등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방송·통신 및 방통융합 관련 주요 국가별 정보 수집 및 분석

방송통신 전략 및 주요 국가의 정책, 법·제도, 산업현황,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했다.

〈표 III - 8〉 국가별 정보 세부 내용

구분	구성	세부 내용
방송·통신 산업현황	방송·통신 관련기관	○ 방송·통신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 개요
	방송·통신정책	○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법·제도 ○ 방송·통신 주요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현황
	방송·통신 지표	○ 방송·통신 시장규모 및 전망 ○ 유무선통신, 인터넷/브로드밴드, TV/Cable, IPTV 등 가입자
	방송·통신 현황	○ 방송·통신시장현황 조사 및 분석 - 주요 방송통신사업자 프로필, TV/Cable, 인터넷/브로드밴드, WiBro·DMB·IPTV 등 방송·통신 및 관련 산업 현황 ○ 기타 방송·통신 및 관련 융합산업 현황
	방송·통신 분야 진출/협력 현황	○ 정부간 협력현황, 국내기업진출현황
방송·통신 동향	주요 동향	○ 방송·통신 최신동향, 트렌드, 정책 소개
일반 약황	일반 약황	○ 국가개요, 정치현황, 경제현황, 한국과의 관계, 주요 이슈

(2) 방송·통신 및 방통융합 관련 주요 품목/서비스 정보 수집 및 분석
IPTV·DMB·WiBro 등 방송통신 서비스 관련 기술, 시장, 정책 정보 수집, 분석 등을 실시했다.

〈표 III - 9〉 품목/서비스 정보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개관	○ 품목/서비스 개요
지표	○ 전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 주요 국가별 시장 규모 및 전망
현황	○ 기술, 표준·인증 동향, 주요 기업 소개
이슈/전망	○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진출현황	○ 국내업체 진출현황 및 진출 제언

미국의 FCC, 영국의 Ofcom 등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중소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 진출사례 발굴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IPTV, WiBro 등 첨단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전망 및 국내 방송통신기업의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관련 기술, 시장, 정책 등 전문적인 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정책, 시장 및 동향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성·효과성을 감안한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존 구축된 불필요한 메뉴 및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서비스는 정비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 및 고객 니즈에 부합하도록 화면 개편 및 신규 메뉴는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간 협력, 기업의 해외진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을 통해, 성과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할 것이다.

4) 방송통신 해외 홍보

가) 현황 및 배경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 진출, 관련서비스 국제표준 채택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와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해외 홍보용 영상물, 발간물 등 제작 활용 및 상설, 비상설 홍보관 운영을 통한 홍보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2008년 11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기술 서비스별 정책, 산업 현황과 강점분야를 쉽고 간결하게 소개하는 방송통신 해외 홍보 브로슈어를 영·중·불·서·아랍 5개 국어로 제작하였다. 또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방송·통신 융합 신기술

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공시설, 민간홍보관 등을 안내하는 방송통신 체험 안내지도(Map)를 영·중·일 3개 국어로 병기하여 제작하고, 영·중·불·서·아랍 5개 국어로 방송통신 해외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 산업 현황과 비전을 소재로 한 방송통신 해외 홍보방송의 제작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이 '08년 12월 해외에 방송되었다(중국 여행위성 TV 2회, 월드(위성)채널 4회, 아랍(위성)채널 4회). 이 밖에도, 방송통신 해외홍보 웹사이트(영문)의 오픈을 준비 중이며(09년 1월 오픈 예정), 이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서비스·기술 홍보 및 방송통신 서비스·기술 체험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경올림픽 개최기간에 맞추어 주중 북경문화원 내에 한국 방송통신 홍보체험관을 구축·운영하여 중국인 및 주중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선진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III - 10〉 북경 방송통신 홍보관 현황

구 분	내 용
규 모	250m ²
홍보내용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 산업현황 등 홍보관, IPTV, u-Home 등 체험관
방문자수	일평균 204명('08. 8~11월 19,555명 참관)

다) 향후 계획(Vision)

이와 같은 해외 홍보 활동 지원 및 상설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방송통신 선진한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 우리 방송통신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시너지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국제협력 전략 지역 내 상설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2008년 비상설로 운영된 북경 방송통신홍보관을 상설화할 예정이다.

5)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최

가) 현황 및 배경(OECD 장관회의 유치 배경)

1998년 OECD정보통신위원회(ICCP) 주최로 최초의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6년 10월 제51차 정보통신위원회(ICCP)에서는 인터넷기반 경제 조성을 위해 필요한 3C(융합(Convergence), 창의(Creativity), 신뢰(Confidence))를 OECD장관회의 주제(themes)로 결정하고, OECD 장관회의 개최 후보지로 한국, 캐나다, 포르투갈 가운데 한국을 선정하여 OECD이사회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2006년 12월 OECD이사회 총회에서는 ‘인터넷의 미래에 관한 OECD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06. 12. 14).

이로써 1961년 OECD 창설 이래 최초로 OECD 장관급 회의가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2007년 5월 OECD이사회는 서울 장관회의의 명칭을 ‘인터넷의 미래’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로 변경하여, 기술적 이슈 뿐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 한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임을 표현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 OECD 장관회의 개최(2008. 6. 17.(화)~6. 18.(수))

본 회의의 표제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로, 주제는 디지털 시대에 융합, 창의, 신뢰를 위한 정책 마련(Shaping Policies for Convergence, Creativity and Confidence in the Digital World)이었다. 44개국(29개 회원국,⁷⁾ 15개 비회원국⁸⁾) 장차관 등 정부대표(정보통신, 경제, 산업, 무역) 및 민간·국제기구 저명인사 등 총 2,300여명이 참석하였다.

〈표 III - 11〉 총 행사참석자

구분	내국인	외국인	계
등록	1,924명(기자 264명)	731명(기자 23명)	2,655명
참가	1,621명(기자 225명)	657명(기자 18명)	2,278명

7) OECD 30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불참

8) 15개 비회원국: 칠레, 중국, 이집트, 에스토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공, 브라질

〈표 III - 12〉 정부측 주요 참석자

구분	참가국	장관	차관	국장(급)	대사*****
회원국	29개국	15명*	5명***	10명	19명
비회원국	15개국	7명**	3명*****	4명	6명
계	44개국	22명	8명	14명	25명

*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EC,

** 이집트,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공

*** 캐나다, 체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 칠레(2), 이스라엘

***** OECD대표부 대사(오스트리아, 프랑스, 한국), 미국 그로스대사, 주 프랑스 라트비아 대사, 주한대사 20명

〈표 III - 13〉 민간연사 참석 현황

국제기구 및 민간 (39명)	국제기구 등 (15명)	OECD 사무총장, BIAC사무총장, ICANN의장, ISOC회장, ITU사무총장, Mozilla재단의장, OECD 사무차장, 구주연합회사무차장, BEUC사무차장, APC국장, ISOC최고기술책임자, TUAC수석정책고문, BIAC ICCP분과 의장, EPIC사무총장, PCH소장
	기업 (13명)	Google부회장, 도요타사장, Fujitsu회장, SK그룹회장, Skype사장, Daum 사장, Fairfax Business Media사장, France Telecom부사장, Tata사장, RIM사장, Telefonical라틴아메리카사장, Skylakeincinvest사장(진대제 前 장관), AT&T-Wireless Services수석부사장
	학계 (5명)	콜롬비아 법대교수, 스탠포드 법대교수, UCLA교수, Ottawa대학교수, APNIC과학자
	기타 (6명)	한국방송인협회장, ZEIT online 편집국장, The Economist紙 기자, 캐나다 프라이버시 집행위원, 프랑스CNIL(정보보호기관) 의장, USCIB 회장,

본회의에서는 인터넷 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 향후 계획(Vision)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위원회(ICCP)는 향후 3년 후 우리의 위치를 재점검하여 새로운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기로 하였다.

2.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송 정착

가.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활성화

가) 현황 및 배경

2008년 7월 기준으로 DMB 가입자는 약 1,440만 명가량으로 이 중 지상파DMB 가입자가 1,298만명(단말판매), 위성DMB 가입자가 14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DMB 사업자 누적 적자를 살펴보면, 2008년 6월 기준으로 YTN DMB는 235억원, 한국DMB 208억원, U1미디어 331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위성 DMB(TU미디어)는 2007년 12월 기준으로 2,703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2007년의 순손실 74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 - 14〉 지상파DMB · 위성DMB 현황

구분	지상파DMB	위성DMB
도입시기	2005. 12.	2005. 5.
사업자 지위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요금	무료	유료
운영재원	방송광고 매출액	월 요금(13,000원), 가입비(20,000원)
사업자수	수도권: 6개, 지역: 13개	1개(TU미디어)
주파수대역	VHF대역(CH8,12) 1.54MHz	S밴드(2.63~2.655Ghz) 25MHz
기술방식	EUREKA-147/H.264/BSAC	SYSTEM E(CDMA)/MPEG-2 AAC+/H.264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방송사업자 현황(최근 방문일: 2008. 12. 8)

〈표 III - 15〉 DMB 사업자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매출	-	216	888	1,197
영업비용	177	1,120	1,599	1,828
영업이익	△177	△904	△711	△631
당기순이익	△148	△965	△842	△748
누적순이익	△148	△1,113	△1,955	△2,703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DMB정책연구반 구성 및 운영('08년 7월~10월)

위원회는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DMB정책연구반을 2008년 7월 3일 구성하여 같은 해 10월 29일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세 회차별 안건 및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조〉 회차별 안건 및 논의사항

- 제 1차 회의('08. 7. 3): 논의과제 및 방향설정
- 제 2차 회의('08. 7. 24): 지상파DMB 정책방안, 위성DMB활성화 방안, 모바일TV 활성화 정책
- 제 3차 회의('08. 8. 28): 지상파DMB 및 위성DMB 활성화 과제별 추진 일정
- 제 4차 회의('08. 9. 17): 단말기 제조사 초청 의견수렴, 위성DMB B2B 판매에 관한 사항
- 제 5차 회의('08. 10. 29): 지상파DMB 광고 활성화 방안, 단말기 선과금제도 도입, 모바일 쇼핑채널 도입, B2B판매 도입

(2)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08년 하반기)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성DMB의 TV채널수 규제완화를 통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전체운용채널수의 2분의 1이하에서 3분의 2이하로 확대하였으며(안 제5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성DMB(위성방송 포함) 직접사용채널수 규제 완화를 시행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채널별로 각각 4개 이내로 하고,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의 전체 운용채널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채널별로 각각 10/100이내가 되도록 변경하였다(안 제53조 제2항 제2호 나목).

〈표 Ⅲ - 16〉 위성DMB의 채널수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위성DMBTV채널	○ 4개 이상 ○ 전체 채널수의 1/2 이하	○ 전체 채널수의 2/3 이하

구분	현행	개정안
위성DMB 직접사용채널	○ TV/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10/100 이내 (TV 채널이 20개 이하인 경우 20/100 이내)	○ 전체운용채널수 100개 초과 - TV/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10/100 이내 ○ 전체운용채널 수 100개 이하 - TV/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4개 이내

2) 방송시장 소유·경영규제 개선

가) 현황 및 배경

현행 방송법은 매체별로 소유제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 외국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사, 1인 지분 등의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III - 17〉 방송법 상 매체별 소유제한 규정 현황

소유대상 \ 소유주체	대기업 (자산총액 3조원 이상)	외국자본	일간신문, 뉴스통신	1인 지분
지상파방송사업자	금지	금지	금지	30%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49%	33%	-
위성방송사업자	49%	33%	33%	-
IPTV 제공사업자	-	49%	49%	-
일반PP	-	49%	-	-
종합편성, 보도PP	금지	금지	금지	30%
IPTV콘텐츠사업자(일반PP)	-	49%	-	-
IPTV콘텐츠사업자 (종합편성, 보도PP)	금지	금지	금지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금지	-	-
전송망사업자	-	4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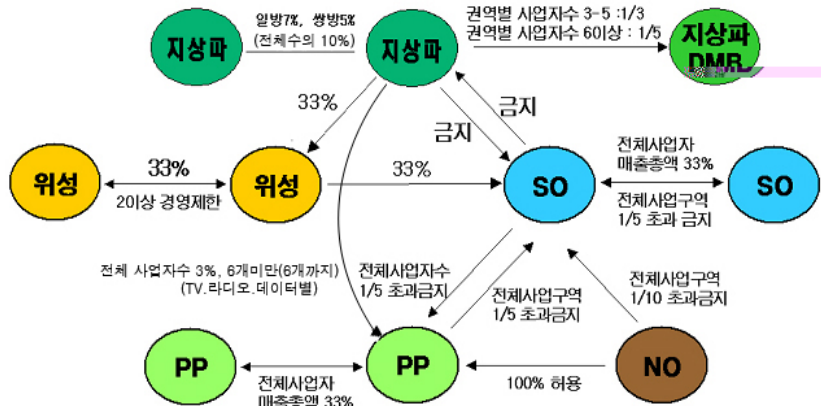
※ KBS와 MBC는 방송법 제8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1인 지분 30% 제한 예외 적용

〈표 Ⅲ - 18〉 방송법상 매체별 경영규제 규정 현황

주체 대상	지상파	SO	위성	PP	전송망 사업자
지상파	○ 일방소유: 7% ○ 쌍방소유: 5% ○ 사업자수: 10% (DMB제외)	금지	-	-	-
지상파 DMB	○ 권역별 사업자수 - 3-5(1/3), 6이상 (1/5)	금지	-	-	-
SO	금지	33%(매출액) 1/5(구역)	33%(주식)	1/5(구역)	1/10 (구역)
위성	33%(주식)	-	33%(주식) 1개(사업자수)	-	-
PP	○ TV·R·D PP 별로 각 3%(사업자수), 6개 미만(6개까지)	○ TV·R·D PP 별로 각 1/5 (사업자수)	○ TV·R·D PP 별로 각 1/5 (사업자수)	○ 33%(매출액, 홈쇼핑 제외)	-

※ 특정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는 전체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 이내

〔그림 Ⅲ - 3〕 방송법상 매체별 경영규제 규정



나) 추진실적 및 성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소유·경영규제 개선을 위해 2008년 하반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기업의 진입제한 완화를 추진,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고 있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 제1항). 이와 같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제한 완화방안에 대해 대기업 자본에 의한 여론 독점우려 및 방송의 다양성 등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개정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융합시대에 대응하고 방송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진입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대기업 진입제한 규정은 방송의 독립성 침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규제라는 등의 개정 찬성의견도 제기된 바 이를 비교 검토한 후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현행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영제한 완화 등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현행 매출액 기준 100분의 33 초과 금지에서 가입가구 수 기준 3분의 1 초과금지로 변경하고,⁹⁾ 이와 관련하여 채널사용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 제한을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현행 5분의 1 초과금지에서 3분의 1 초과금지로 같게 완화하였다(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독점력 상승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의 증대에 대한 우려,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현상을 조장할 우려 등의 개정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콘텐츠 투자, 디지털 전환, 신규 서비스 도입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 방송구역수의 확대는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 그리고 IPTV와의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등의 개정 찬성의견이 제시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영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 현황 및 배경

그 동안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사업자들 사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방송 산업 성장 저해는 물론 시청

9)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5분의 1 초과 금지를 3분의 1 초과금지로 완화함

자 피해가 유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2008년 8월 SO·PP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하여 단계별 대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회의를 통해 SO 재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¹⁰⁾

다) 향후 계획(Vision)

위원회는 SO·PP 가운데 유료방송시장을 선도하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현황, 원인, 폐해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토록 할 계획이며, SO 재허가시 재허가 조건으로 PP 프로그램 사용대가에 대한 의무 지급비율을 명시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PP 수신료 배분기준 및 산정기준을 제출받아 수신료 배분비율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반을 설치·운영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1)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가) 현황 및 배경

공익성 방송분야는 방송채널의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취지하에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을 공익채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05년 10개 분야/16개 채널에서 '07년에는 6개 분야/12개 채널로 축소되었다.

10) '2009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위원회 의안번호 2008-31-127호, 2008. 9. 25)

〈표 Ⅲ - 19〉 공익성방송분야 변천 과정

'05년도	'06년도	'07년도
①한국문화(한국어) ②한국문화(영어) ③수능교육 ④초·중등교육 ⑤사회적소수대변 ⑥환경·자연보호 ⑦어린이·청소년 ⑧과학·기술 ⑨순수예술·문화 ⑩역사·다큐 ※ 10개분야 16채널	①한국문화(영어) ②시청자참여 ③수능교육 ④장애인시청지원 ⑤교육 ⑥환경·과학 ⑦순수예술 ⑧사회적소수대변 ※ 8개분야(채널선정 유보)	①시청자참여·사회적 소수이 익대변 ②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 ③문화·예술진흥 ④과학·기술진흥 ⑤공교육보완 ⑥사회교육지원 ※ 6개분야 12채널

※ 2005년 선정 공익채널은 8개 채널 의무전송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2008년 8월, 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의 일환으로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 수립하고 「방송법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라 공익채널을 선정하였다.

〈표 Ⅲ - 20〉 2009년도 공익성 방송분야

공익성 방송분야	전문편성내용
시청자참여· 사회적소수이익 대변	○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 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 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육아·어린이 관련 정보, 노인복지 정보 등을 제공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문화·예술 진흥	○ 순수예술, 공연예술, 예술교육 등 예술에 대한 이해와 진흥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과학·기술 진흥	○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기초과학, 기계전자,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공익성 방송분야	전문편성내용
공교육 보완	○ 어린이·청소년의 공교육 보완을 통해 과외대체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격차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사회교육 지원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직업교육 등 방송의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자료: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위원회 의안번호 제2008-30-120호, 2008. 8. 12)

이때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방송분야별로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 가운데서 각 분야별 1, 2위를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한 채널이 없는 경우 공익채널을 선정하지 않았다. 비록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두어 선정할 수 있다.

〈표 Ⅲ - 2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비고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50	비계량
	과거 채널 운영실적	150	비계량
	〈소계〉	200	
공정성·공익성 및 실행가능성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200	비계량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	50	비계량
	방송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50	비계량
	〈소계〉	300	
운영계획의 적정성	전문편성 비율	70	계량
	제작유형별 편성비율	130	비계량
	본방프로그램 편성비율	100	계량
	〈소계〉	300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30	비계량
	재무건전성	50	비계량
	재정운영 계획	20	비계량
	〈소계〉	100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비고
시청자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	시청자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50	비계량
	시청자민원처리 실적	50	비계량
	〈소계〉	100	
〈합 계〉		1,000	

※ 2005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처리하
되, 25점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

자료: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위원회 의안번호 제2008-30-120호, 2008. 8. 12)

또한 2008년 하반기 위원회는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하였는데 대상채널은 11개 채널로써,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시청자참여·사회적소수이익 대변(2): 복지TV, 법률방송
- 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2): 육아방송, 실버TV
- 문화·예술 진흥(2): 아리랑TV, 예당아트
- 과학·기술 진흥(1): 사이언스TV
- 공교육보완(2): EBS플러스1, EBS플러스2
- 사회교육 지원(2): JEI English TV, JCBN

다) 향후 계획(Vision)

향후 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 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선정된 공익채널을 대상으로 분기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 계획대비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는 다음 연도 공익채널 선정 신청자격을 배제할 예정이다.

2)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배경

구 방송위원회는 5개 TV홈쇼핑사를 대상으로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사는 3년간 이행계획('07~'09년)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다.

〈참조〉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07. 6. 19)

- ① 유망 중소기업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 ②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 ③ 송출수수료 경쟁 지양
- ④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시행
- ⑤ 중소납품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직매입 제도 등 매입형태 개선
- ⑥ 정액수수료제 방송 축소
- ⑦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007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기준 등과 관련하여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먼저, 중소기업 기준 조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육성의 취지와 목표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준을 일원화했다.

〈표 Ⅲ - 22〉 기준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업종별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 기준에 맞는 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등)
홈쇼핑사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업자 대상	홈쇼핑사에 납품한 상품의 제조업체 대상

다음으로 권고항목 조정 및 적용기준 표준화를 통해, 7개 항목으로 지나치게 세 분류, 중복된 항목을 4개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필수 이행계획 자료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III - 23〉 권고항목 조정 및 적용기준 표준화 현황

항 목	필수 이행계획 제출자료
①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확대	○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중 하한(%)
② 중소 납품업체 거래조건 개선	○ 직매입 계획(억원) ○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상한(%) ○ 동일 업종 내 대기업/중소기업 제품 판매 수수료 격차 해소 ○ 방송제작비 전가 문제 해소 ○ 송출수수료 증가분 납품업체 전가 지양
③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④ 중소납품업체 품질개선/자금 지원 방안	
※ 직매입제도: TV홈쇼핑사가 공급업체 상품소유권을 넘겨받아 책임지고 판매하는 방식	
※ 정액수수료: 납품업체가 TV홈쇼핑사에게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방송시간에 대한 일정금액을 고정비로 지불하는 방식	
※ 판매수수료: 납품업체가 TV홈쇼핑사에게 지급하는 판매대리 비용	
※ 송출수수료: TV홈쇼핑사가 채널송출을 위해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	

마지막으로 다음 표와 같은 '08~'09년 이행계획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표 III - 24〉 중소기업제품 편성 및 매출비중의 조정

필수 이행계획		변경전(기제출)	기준 변경후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중 하한 (%)	GS	관련제도 개선	53%이상
	CJ	70%이상	53%이상
	현대	75%이상	53%~53.5%이상
	롯데	80%이상	54%이상
	농수산	프라임시간대 75~80%이상	55%이상

〈표 III - 25〉 중소 납품업체 거래조건 개선

필수 이행계획		변경전(기제출)	기준 변경후
○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계획(억원)	GS	전년대비 10%확대	500억이상
	CJ	취급고대비 2% 이상	176억이상
	현대	점진적 확대	20억이상
	롯데	20억~50억이상	20억~50억이상
	농수산	관련제도 개선	10억이상

필수 이행계획		변경전(기제출)	기준 변경후
○ 중소기업 제품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비중 상한(%)	GS	가이드라인 준수	10%이하
	CJ	10%이하	10%이하
	현대	20%~18%이하	12.5%~12%이하
	롯데	20%이하	12%이하
	농수산	28%이하	15%이하

이 때, 기타 5개 사업자 모두 ‘동일 업종 내 대기업/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 격차 해소’, ‘방송제작비 전가 문제 해소’, ‘송출수수료 증가분 납품업체 전가 지양’에 관한 이행계획 제출, 중소기업 제품 신규 진입 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을 실시하였다.

다. 방송의 다양성확대를 통한 국민문화 향상도모

1) 신규영어 FM방송 도입

가)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여 명에 이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지닌 국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영어방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권역별 경제권 및 FTA 체결 등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의 진행속도 역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어방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신규영어 FM방송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III - 26〉 우리나라의 국제화 정도

항 목	현 황
• 국내 상주 외국인	1 백만
• 방문 외국인	7 백만
• 교역국	230 여개 국가
• 영어방송 현황	아리랑TV(유료채널), 아리랑 영어FM(제주지역)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기본계획 수립(2008. 5. 2)

신규영어 FM방송 도입 지역은 서울권, 부산권, 광주권을 우선 도입하되, 주파수 확보여부에 따라 광역시 단위까지 도입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은 해당 서비스가 공익서비스 성격임을 고려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심사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운영재원은 선정된 사업주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장르 구분 없는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다양한 청취자 층의 기호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뉴스, 토론, 음악, 정보제공 등 종합편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사업자 선정

신규영어 FM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3일에 서울지역 사업자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하고 2008년 10월 24일 광주지역 사업자로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재단을 선정하였다.

(3) 기대효과

이와 같은 신규영어 FM방송 도입을 통해 우선, 능동적 개방주의 실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장·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성화 기회제공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활동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향후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과 광주 이외의 광역시 단위까지 영어방송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2)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가) 현황 및 배경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방송법 제42조의2, 2007. 1. 26 신설). 또한 다음과 같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참조〉 위원회 직무(방송법 제42조의4)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와 같은 방송법 개정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그 구성과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2008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5명 위촉했으며(방송법 제42조의3), 위원 5인 중 2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송도균 부위원장, 이병기 상임위원),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이사,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재욱 법률사무소 오름 변호사)가 위촉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이 임명되었다. 또한 지역방송대표단체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고시하였다(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사업자단체 부문	학술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한국지역방송협회	한국방송학회	방송균형발전연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제2008-47호, '08. 5. 19)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2008년 8월 19일 구성된 이후 모두 세 차례의 정기회, 두 차례의 임시회를 가졌으며, 회차별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조〉 회차별 논의 사항

- 제1차 회의('08. 8. 19): 지역방송 현안에 관한 사항
- 제2차 회의('08. 9. 16):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지역방송 관련 사항
- 제3차 회의('08. 9. 29):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지역방송 관련 사항
 - SO 겸영규제 완화 관련 사항
 - 민영 미디어랩 도입 관련 사항
- 제4차 회의('08. 10. 27)
 - 지역방송 편성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공익채널 선정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제5차 회의('08. 11. 14): IPTV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 제6차 회의('08. 11. 24): IPTV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라.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

1) 방송규제 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배경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방송규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과거의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치는 비효율적인 과정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의 제도로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요구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 절차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 동안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비효율적인 제도의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 절차를 검토, 심의기구를 독립기구로 별도로 둔 법 취지를 존중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기속 처분을 위해 매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방송심의 제재조치 처분 명령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법 제25조제2항에 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진술 절차는 심의위원회 의견진술로 같음하기로 하였다. 이외의 「방송 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제2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 또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서면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5조), 재심청구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했다(제6조).

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방송규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제도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

1) 방송편성의무비율 준수여부 감독

가) 현황 및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정서에 맞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장려하며, 국내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의무비율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콘텐츠에만 집중하여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의 과도한 유통과정이 일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주)온미디어, (주)챔프비전, (주)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주)대원방송에 대해 2007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집행하였다. 심의담당자와 피심인의 의견을 듣고 반복적 법령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7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2005. 1. 22)에서 규정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방송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표 III - 27〉 과태료 및 시정명령 세부 내역

의안번호	법인명(채널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과태료	시정명령
제2008-19-049호	(주)온미디어(투니버스)	○ 1개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2,250만원	'08년 3분기내
제2008-19-050호	(주)챔프비전(챔프)	○ 1개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2,250만원	'08년 3분기내
제2008-19-051호	(주)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애니맥스)	○ 1개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750만원	'08년 3분기내
제2008-19-052호	(주)대원방송(애니박스)	○ 1개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375만원	'08년 3분기내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시청자에게 공표하고, 공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공표일시: 해당채널의 토요일(15:00~17:00), 일요일(08:00~10:00)에 각각 1회 이상
 - 공표방법: 전체화면 1/8 크기로 화면하단에 흐르는 자막으로 회당 연속하여 2차례
 - 공표내용: 저희 ○○○은 2007년 4분기에 일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추진

가) 현황 및 배경

방송평가제는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2001년 실시 이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표 III - 28〉 방송평가제 관련 연구

보고서 제목	발행기관	방송평가제 관련 주요 내용	비 고
방송제도 연구 위원회 보고서	방송위원회 (1990. 6)	○ 방송심의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방송 허가와의 연계할 것을 제안 ○ 허가기간 중의 내용심의 결과를 재허가에 반영토록 권고	○ 방송평가제 도입에 대한 최초 논의
공영방송발전 연구 위원회 보고서	방송위원회 (1994. 3)	○ 심의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결과를 허가, 재허가시에 반영하고,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	○ 허가, 재허가 및 방송 평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거론
2000년대 방송정책 연구위원회 보고서	방송개발원 (1994. 8)	○ 방송활동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재허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언급	
선진방송 발전정책 연구 보고서	공보처 (1994. 12)	○ 시청자권익 중심의 방송평가제도 정착에 대한 내용으로 시청자 감시활동 및 시청자 의견수렴기능의 제도화와 방송 사업활동을 평가 및 방송심의 결과를 허가 및 재허가와 연계할 것을 제안	○ 방송평가는 프로그램 심의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운영평가와 내용평가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가임을 분명히 함
통합방송 법제에 관한 정책의견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1998. 3)	○ 내용규제의 개선책으로 프로그램별 심의를 지양하고 방송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	
방송 개혁위원회 보고서	방송개혁 위원회 (1999. 2)	○ 방송사 재허가와 형식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을 포함하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방송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과 제재를 행할 것을 제안	○ 개선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안) 제출
방송평가 방안 연구 종합보고서	방송위원회 (1999. 10)	○ 방송내용, 방송편성, 방송운영, 방송사 경영평가 등 개별 평가영역 및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	○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연구 등 평가제 시행에 대비한 구체적인 연구 진행
방송평가제 시행방안연구 보고서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2000. 2)	○ 방송사업자별 표준평가모델(안)과 세부 평가항목, 방송일지 표준양식(안), 프로그램 개요서 양식(안) 프로그램 표준분류요목(안), 표준회계규칙(안) 등 방송평가제 실행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	○ 평가제 시행에 대비하여 실행과제 및 세부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진행

자료: 방송위원회(2001. 6. 28), 『방송평가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방송평가의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제1호에 의거,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진 및 재승인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는데, 이 부분이 방송평가 주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평가 대상(방송사업자)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이에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방송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평가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

이에 2009년 방송평가부터는 방송평가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및 방송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계획되고 실시되었으며, 이는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 사업자의 2007년 1년간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방송평가 실시의 기본 방향은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방송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표 Ⅲ - 29〉 매체에 따른 방송평가 영역(내용·편성·운영)별 배점

평가대상 매체 \ 방송평가 영역	내용	편성	운영	총점
지상파방송사업자(TV)	300	300	300	900
지상파방송사업자(R)	250		250	500
SO·위성방송사업자	200		300	500
PP(보도분야)	250		250	500
PP(홈쇼핑분야)	250		250	500

자료: 전해선(2008), 방송평가제의 쟁점과 전망

현재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54개 방송사업자이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Ⅲ - 30〉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 구분

구분	합계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홈쇼핑
사업자수	154	43	103	1	2	5

3)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시행

가) 현황 및 배경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국민관심행사의 방송권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8년 2월에 개정된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하고,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개정된 방송법 및 2008년 2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고시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규칙공포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08년 2월). 이에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 위원으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었다(안 제2조제2항, 제5항).

〈표 III - 31〉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전·현직	분야
위원장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송해룡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송학계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정대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실장	체육계
	박형상	박형상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계
	하운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언론·연구기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시청자단체

이 때,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한 고시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 정하였다.

3. 이용자 편익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가.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확대

가)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의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가구(1.9%) 보다 5배 높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하여 통신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다. 감면서비스는 시내·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번호안내 등으로 가입비 면제, 서비스별 월 이용요금의 30~50% 수준에서 감면해주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71만 명이지만, 실제 감면을 받고 있는 자는 10%수준인 7만 3천명에 불과하며, 금액도 59억 원 수준에 못미친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연령 제한과 저소득으로 인해 실제적인 감면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별로 보면,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비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중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연령인 18세 이상 65세미만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3만 원 이하로 이동통신비를 지불하는 이용자가 76.5%로, 일반가입자와 비교하면 저소득층 대부분이 소액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도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한 이동전화기가 유선전화에 비해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동전화는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통신수단이란 점에서,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전화 요금 감면 방안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통신서비스 중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보편적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요금감면 정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차상위 계층은 생계형편이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실정이다.¹¹⁾ 이에 따라 이동전화 감면대상자 수가 기존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인 7만 3천 여 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약 155만 명, 차상위계층 약 2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감면대상자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 폭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고 있던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에서,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요금 감면액이 기존의 연간 59억 원에서 약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III - 3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효과

- 대상범위: 기초생활수급자 18세미만, 65세 이상에서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감면방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감면에서
⇒ 기본료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유선전화 수준)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합 계
감면대상자 수	155만명			270만명		425만명
예상감면자 수	139만명			243만명		382만명
요금감면방법	가입비 면제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통화료 35%감면	-
예상 감면액(연간)	170억원	2,160억원	520억원	310억원	1,930억원	약 5,000억원

※ 예상감면자수=감면대상자 × 이동전화보급율(90%)

11)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 현재 영유아 보육비, 한 부모 자녀 학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청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해당되는 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단,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가구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해당 월의 이동전화 요금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면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가 쉽고 간편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이동통신사와 함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나갈 방침이다.

2)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추진

가) 현황 및 배경

요금인가제는 통신 시장의 자연독점적 특성상 지배적사업자의 수익률 규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며(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83년), 경쟁도입 이후에는 지배력 억제,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환경 조성(가격인상, 약탈적 가격인하 및 차별적 가격설정 방지 등)차원에서 유지되어 왔다. 현재 통신요금은 신고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인가제 운영하고 있다. 인가대상은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출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에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T의 2G 이동전화의 인가 대상이다.

최근,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서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요금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재 통신시장의 구조와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의 완전한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

려하여 요금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와중에 2007년도 (구)정보통신부는 소매요금 인가제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제17대 국회에서 재판매제도(도매규제) 도입을 전제로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폐기되었다. 그 후 신 정부 출범과 함께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요금인가 규제 완화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가대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의 요금을 올리는 요금제 변경에 대해서만 요금인가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가제를 완화하여 요금의 인하의 경우는 신고만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전규제 완화 조치에 비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통신정책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요금설정 행위에 한해서는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 인가제 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게 요금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요금 인가제의 개선을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비정상적인 요금을 설정하여 통신시장 전반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였다. 또한 요금의 인하가 촉진되면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가되고 통신비 절감을 통한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가제 완화 정책이 입안되었더라도, 사전적 요금 규제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완화

된 요금 인가제 및 요금 신고제 운영의 투명성,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하고, 요금 사후규제로서 추진된 금지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조문의 근거가 되는 원가, 현저히 높고 낮은 요금의 판단 등에 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변화, 복잡화되는 시장에 대해 보다 엄밀한 시장확정 및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기초한 요금인가제 운영 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나.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1) 도매제공(재판매) 제도 도입 추진

가) 현황 및 배경

재판매(도매제공) 제도란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규모의 경제와 주파수계약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통신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설비기반 경쟁정책의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재판매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시장에는 KT를 비롯한 20여개의 재판매사업자가 진입하여 있으나, 특수 관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정에 의한 도매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신규사업자가 지배적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에 네트워크 및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 도입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3월 15일, (구)정보통신부는 도매제공 “통신 규제 정책 로드맵”을 통해 도매규제 도입 전제조건 및 법률개정 시안 마련 계획을 공표하였으며, 1년여 이상의 연구와 전담반 의견수렴을 통해, 2008년 1월 28일 (구)정보통신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 부과 및 도매제공 대가 산정기준 고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7대 국

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2008년 5월 16일 자동 폐기되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내역

-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와 서비스 지정: 기간통신서비스 중 전년도 시장 점유율이 일정부분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무사업자로 지정
-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을 고시: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설비·서비스에 대한 도매제공 기준 및 사용기간, 사용제한 및 거절사유 등을 규정
- 90일 이내 협정체결 의무화 및 협정인가제도 도입: 도매제공의 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협정을 요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인가 신청
-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해 사후적으로 규제: 도매제공 시 차별적 조건부과, 협정 체결 거부, 협정 불이행 등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 아울러, 사업자는 협정이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도매제공 대가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시장 자율을 원칙으로 함

이를 통해 재판매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신규사업자 진입으로 사업자 수가 증가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방송·제조업·유통 등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의 통신서비스와 차별화된 상품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업자 규모 및 사업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재판매 네트워크 관리, 빌링시스템, 유통·영업 분야 등 재판매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향후 계획(Vision)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와 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도매시장의 획정 및 시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부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도매시장 경쟁상황평가와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등 도매제공 기준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

함으로써, 협정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규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가) 현황 및 배경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제도는 시내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2007년 3월 15일, (구)정보통신부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통해 유선전화 시장의 경쟁상황 개선을 위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을 추진을 발표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의 도입을 의결하고, 2008년 10월 31일부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에 따라 번호이동성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까지 확대하였다. 단,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통신, 위치 변경시 위치정보 등록, 정전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를 홍보하여야 하며,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시 통화권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전화의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의 위치정보 재등록과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위치정보 재등록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고시에 사업자의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긴급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KT 긴급통신 시스템에 위치정보를 등록하여 긴급구조기관에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때, 이사 등 위치 변경 후, 위치정보를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 오류로 인해 구조업무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반드시 위치정보를 재등록해야 함을 고지하도록 사업자에게 홍보의무 부과하였다.

정전시 통화 불가 문제에 대해 인터넷전화는 정전 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고시와 이용약관에 홍보의무를 부과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인터넷전화 통화권 이탈과 관련하여 통화권 이탈 사용 시 과금 및 인식 상의 혼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인터넷전화의 특성상 통화권 이탈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워, 제도적인 방안으로 통화권 준수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통해 인터넷전화 신규 가입 시 070번호 대신 기존 집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터넷전화 서비스 확대되고, 이는 관련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전화 활성화로 관련 유선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산업후방 효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는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향후 계획(Vision)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급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위치정보의 재등록, 정전시 통화 불가능 등 인터넷전화의 근본적인 한계점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자 홍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업무지원단 운영할 계획이다.

3)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추진

가) 현황 및 배경

종래의 시내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으로 구분된 통신시장의 세분화된 역무체계는 서비스별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여 통신·방송 서비스 융합추세에 부적합하다. 또한 허가심사기준이 서비스 제공 측면 이외에 기술개발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2008년 9월~11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재추진되어(일부조항 수정), 2008년 11월~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공청회(12. 8)가 이루어졌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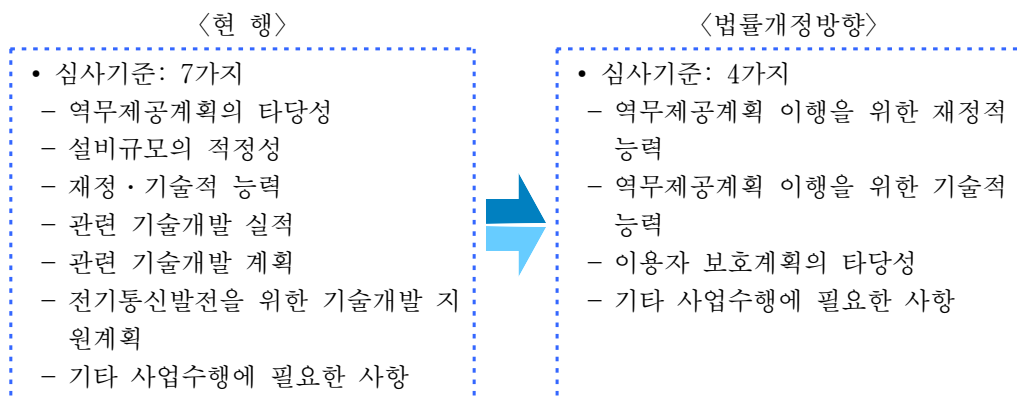
2008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방통위에 의결(12. 12)되었다. 그 결과 2008년 12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3가지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단일화(다만, 무선통신 사업시 별도 주파수 할당은 필요)하여, 하나의 허가장(License)으로 다양한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라는 진입절차는 유지하되 심사기준을 완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으로 허가심사 기준을 축소하였다.

[그림 III -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이러한 허가제도 완화를 통해 신규사업자와 서비스의 원활한 통신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하고, 한 번의 허가로 다수의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대폭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 향후 계획(Vision)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그 후속조치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허가심사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4)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접속료 산정

가) 현황 및 배경

상호접속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에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상대방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상호접속료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접속을 원활히 하고 공정·타당한 상호접속료 산정을 위하여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및 방법과 대가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특히, 유선전화망, 이동전화망의 상호접속료는 2년 단위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시장 경쟁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한 신규서비스 활성화와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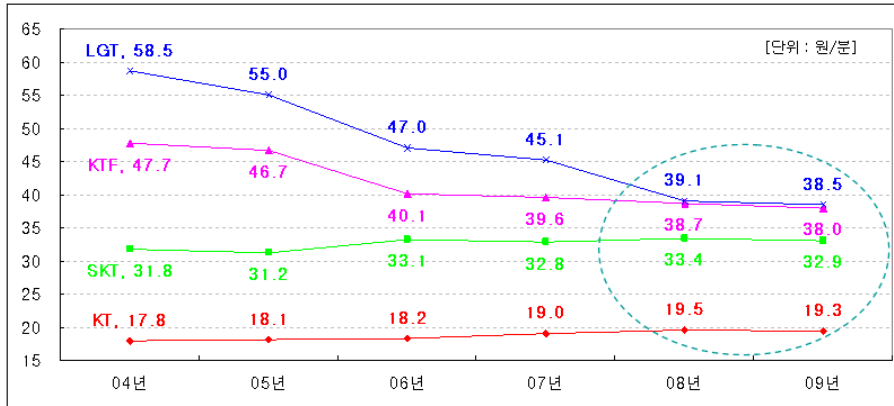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개선 전담반 논의를 진행하여, 2008년 11월 21일, 상호접속료 제도개선에 관한 12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동 합의를 반영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27호, 2008. 12. 17)하였다.

이번 개정은 BcN 등 차세대 유·무선망의 투자촉진과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비자 이익증대를 위해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유무선 전화망과 인터넷전화망의 2008~2009년도 상호접속료를 산정하고,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유선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 중 일부를 감면토록 하고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도 강화함으로써 신규서비스인 인터넷전화의 수익성과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 - 33〉 상호접속료 개정 주요내용

(단위: 원/분)

구분		유선전화망 (KT 등)	이동전화망			인터넷전화망
			SKT	KTF	LGT	
기존	2007년	18,9849	32,7757	39,6049	45,1317	5.5
개정 내용	2008년	19,4850	33,4068	38,7062	39,0860	7,6650
	2009년	19,3112	32,9318	37,9619	38,5302	7,6674



다.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1) 휴대인터넷(WiBro)

가) 현황 및 배경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는 무선LAN 기술 기반의 이동 무선광대역 데이터 통신서비스인 Mobile WiMAX 표준 동작모드의 한 가지로 Mobile WiMAX의 한국 버전을 의미한다. WiBro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결합, 통합 기반 접속망 조성을 통해 유무선 통합을 본격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WiBro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4세대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와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가 넓고,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저조한 해외 국가에서 초고속인터넷과 LAN망 구축에 WiBro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및 관련 장비의 해외진출

전망이 밝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서비스 활성화는 다소 저조하여 가입자수가 19만 여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WiBr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WiBro에 010 번호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무선인터넷 서비스만 제공 가능한 WiBro에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번호를 부여하여 이동전화, 시내전화 등 다른 통신망 가입자들과 음성통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번호부여를 통해 국내에서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WiBro를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WiBro 사업자는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음성통화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들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등 번호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8년에도 WiBro 서비스 제공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KT의 경우 서울·수도권 22개시 전역 개통을 포함 총 28개시로 확대, SKT의 경우 서울 전역 개통을 포함 총 42개시로 확대하고 있으며, KT와 SKT가 2008년 WiBro 망 구축시 Wave2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더욱 빠른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 향후 계획(Vision)

WiBro 음성통화 서비스는 WiBro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개발, 제조업체의 단말 개발 및 정부의 제도 정비 등에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9년 12월 경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서울·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전국망 및 읍면지역 커버리지 확보와 서비스 품질의 안정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WiBro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및 WiBro 장비업체, 서비스제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 로드쇼 및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국가가 WiBro 서비스를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1) 전파자원의 이용 활성화

가) 현황 및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사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전파이용자의 실질적 권리를 확대하고자,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00년에는 주파수 양도, 2005년에는 주파수 임대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하였다. 즉, 양도·임대 대상을 대가할당 받은 주파수(3G, WiBro, 위성DMB, LBS)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절차규정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주파수 이용자의 자율권 부여를 통해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고, FACS 등 비면허 용도 미지정 대역의 도입 추진하였다. 60GHz 밀리미터파 대역을 용도 미지정 대역으로 기 분배하였으며('06. 7.), ISM 대역에서의 용도 및 기술중립성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 지정 서비스를 고려하여 최적 공유를 위한 이용기준 마련 및 적용대역 추가 발굴하였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위원회는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의 승인과 관련해 「전파법」개정('08. 6. 13) 및 「전파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하였다.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양수·임차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기존 가입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으며, 주파수의 독과점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승인제도를 사전 승인제도로 변경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파법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08. 9) 하였으며, 연말('08. 12. 14) 공포 및 시행 예정이다.

다) 향후 계획(Vision)

단기적으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단계적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파이용 자유화에 따른 주파수 양도·임대 정비방안 마련 및 신속한 거래 지원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구축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대역의 경우 전파정책 목표, 시장상황, 산업 및 경쟁 정책 측면의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유화 도입 방안 검토하고, 신규대역의 경우 주파수 대역별 특성과 유사 업무와의 경쟁·보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유화 도입방안 검토할 계획이다.

2)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기술 연구 및 개발

가) 추진실적 및 성과

(1) 전파기반기술 연구 및 개발을 추진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공급·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주파수공유기술, 전파간섭분석 기술, RF/안테나 핵심 기술 등 전파기반기술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서비스·기기를 대상으로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는 공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그 동안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70~90GHz대역 등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가용 주파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였다.

(2)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방안 마련

모바일 컨버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방안 마련하였다. 3GPP LTE-Advanced 기술, IEEE 802 계열의 WiBro Evolution 기술, IMT-Advanced Enhancement 기술, IMT-Advanced 전파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 및 Beyond IMT-Advanced 핵심 원천 기술 등 차세대 이동통신 기반 기술 확보 및 표준화 추진 방안 마련하였다.

나) 향후 계획

국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주파수 공급 확대

가) 추진실적

(1) 800MHz와 900MHz의 우량 주파수 확보 및 공급

우량 주파수대역인 800MHz 셀룰러 대역에서 20MHz폭을 회수하고, 900MHz 대역에서 20MHz폭을 회수하여 총 4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하였다(2008. 12. 31).

800MHz 셀룰러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2011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가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MHz폭을 회수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FM방송중계 등으로 사용하는 900MHz대역에서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20MHz폭 회수하고, 현재 사용 중인 FM방송중계용은 1.7GHz대역으로 이전하고 RFID/USN 용 및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는 900MHz대역 내에서 재배치할 예정이다.

(그림 III - 5) 900MHz 대역의 우량 주파수 확보 방안



(2) 3G(WCDMA), WiBro 등 미할당 주파수 공급 추진

2.1GHz 대역의 3G(WCDMA) 미할당 주파수 40MHz 대역폭과 2.3GHz 대역의 WiBro 미할당 27MHz 대역폭에 대한 주파수 공급 추진하였다(2008. 12. 24). 2.1GHz 대역의 WCDMA 미할당한 주파수 40MHz 대역폭을 2010년경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이며, 2.3GHz 대역에서 현재 SK텔레콤과 KT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할당한 27MHz 대역폭은 WiBro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3)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 추진

1.8GHz 대역의 2G PCS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주파수 활용 및 ITU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 대역 확보를 추진하였다(2008. 12. 22). 1.8GHz 대역의 2G PCS 주파수는 2011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3G이상 용도로 재할당 계획이지만, 주파수 이용 상황에 따라 일부 주파수 회수가 가능하다. ITU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00~2690MHz 및 3400~3600MHz 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1.8GHz 대역의 PCS 주파수는 이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KTF와 LGT

에게 각각 40MHz, 20MHz 대역폭을 재할당 계획이지만, WCDMA용 주파수 또는 800MHz/900MHz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와 1.8GHz대 가입자 추이를 고려하여 일정부분(또는 전부)을 회수할 예정이다.

(4) WRC-07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

200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결과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을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2008. 12. 31).

〈표 III - 34〉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개정

주파수 대역	현행 분배	개정 분배
7100~7200KHz	방송	아마추어, 고정, 이동
698~740MHz	방송	방송, 고정, 이동
960~1164MHz	항공무선항행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R)
5091~5150MHz	항공무선항행	항공무선항행, 항공이동
9300~9500MHz	무선항행, 무선표정(2순위)	무선항행, 지구탐사위성, 우주연구, 무선표정(1순위)

나) 향후 계획

향후 800MHz와 900MHz 대역에서 회수한 각각 20MHz, 총 40MHz 대역폭을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경쟁촉진을 위해 3G 이상 용도로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특정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은 2009년에 시행하고, 시장 경쟁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09년에 할당방법(대가할당 또는 경매), 할당대가(또는 경매 최저가), 기술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4)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용 주파수(채널) 배치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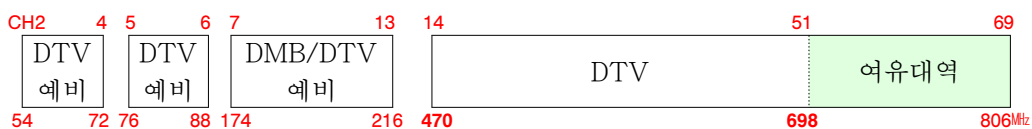
가) 추진실적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나라 아날로그 TV방송이 2012년 12월말 이전까지

종료되고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TV방송국 허가시 지정할 「디지털 TV 방송용 채널계획」을 수립하였다(2008. 12. 22).

또한 디지털 TV 방송용 주파수 계획과 관련하여 14~51번(38개 채널)을 DTV 주파수 대역으로 확정하고, 2~6번(5개 채널)은 DTV 예비용으로 확보하되 채널 배치를 보류하는 동시에 7~13번(7개 채널)은 지상파 DMB가 우선 사용하고 지역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DTV 예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 - 6〕 우리나라 TV 방송 주파수대역 이용계획



나) 향후 계획

여유대역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후인 2013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2009년부터 수요조사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가) 현황 및 배경

기존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던 방송서비스가 디지털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라디오방송은 단순 오디오 정보 외에 영상이 부가되어 보는 라디오로 발전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 시청자의 편익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IPTV, DMB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등장하여 시청자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기 위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송 서비스는 방송매체의 고유 기능인 정보 전달 기능이 향상된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청자 권익 향상과 방송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과 방문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이 국내문화 및 생활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매체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생활 편의를 위해 국제학교, 외국인 병원 등 물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으나, 국내 문화 및 생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나) 추진실적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 문화 및 생활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008년 5월 신규 영어FM방송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우선 수도권·부산권·광주권을 중심으로 영어FM방송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시는 2008년 6월 수도권 영어FM방송국 개설허가를 신청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능력 및 방송의 공익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일부 필요 사항은 부관사항으로 명기하여 영어FM방송국 개설을 허가하였다('08. 7월).

2008년 10월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 산하 광주영어방송재단에 광주영어FM방송국(98.7MHz, 1KW)을 허가하였고, 2008년 12월 부산시 산하 부산영어방송재단에도 부산영어FM방송국(90.5MHz, 1KW)을 허가하였다.

2008년 12월1일 서울시 교통방송에서 운영하는 tbs-eFM(101.3MHz, 1KW)은 시설구축을 완료·개국하여 본방송을 실시하였다. 광주 및 부산 영어방송재단도 송신 및 연주시스템 시설 구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에 영어FM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08년 8월 위성DMB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오디오 신호에 보조영상(슬라이드 이미지)신호를 함께 전송하는 '비주얼라디오' 서비스 기술 도입이 가능하도록 『무선설비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스튜디오 안의 상황을 시청자가 직접 볼 수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의 단순 목소리만을 청취하는 것이 아닌, 스튜디오 안의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시청자는 더욱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8년 8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수도권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는 고화질(HD) 지상파방송 재송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 및 전파법 제21조·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디

지털위성방송의 제16위성방송국과 제17위성방송국 개설을 허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케이블TV 축진을 위해 '08. 7월, 상·하향 주파수대역 확대 및 MPEG-4 방식을 도입하여 HD프로그램 수 확대와 원활한 TPS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08. 12월에는 그간 케이블TV방송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케이블카드 분리의무를 2년간 유예하였을 뿐 아니라 폭 넓은 검사제도 개선을 통해 케이블방송사의 사업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다) 향후 계획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인 DCAS 표준화, IP기반의 서비스 도입 지원, 보급형, 저가형, 융합형 등 다양한 셋탑박스 개발·보급 등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6)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지원

가) 현황 및 배경

전파방송산업은 전파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산업으로 전파의 이용이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전파방송 핵심산업 및 전파방송 관련산업을 말하며, 가장 폭넓게는 전파를 이용하거나 향후 전파이용이 필요한 산업을 지칭한다. 전파방송산업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원하는 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중요 매개체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은 이동통신, WiBro, 디지털 방송, RFID, DMB, 디지털 홈네트워크 등 신산업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수해나 화재 등 각종 재난 방지와 구급, 치안, 교통관리, 환경보존 등 국민생활 안전과 편익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도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내 IT산업 중 전파방송산업은 약 34%의 비중(2008년 3월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전파방송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 향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실적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도국 T-DMB 시범방송을 지원하였다.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ITU 국제표준으로 채택('07. 12월)된 지상파DMB의 해외 진출과 글

로벌모바일TV 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상파 DMB 시범방송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 DMB 업체의 해외진출을 도모하였다. 2008년 8월,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범서비스 지원 후보 4개국(말레이시아, 이집트, 필리핀, 브라질)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0월 선정위원회에서 계량평가·비계량평가·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 2개국(말레이시아, 이집트)을 선정하였다. 이후 지원대상국 정부 및 시범방송 주관 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도국 T-DMB 시범방송 지원대상국으로 선정된 이집트 ERTU(11월 30일)·말레이시아 Media Prima(12월 3일)와 상호협력협정(MA)체결하고 2008년 12월 T-DMB 시범방송을 위한 방송국 및 송신소에 장비 설치 및 시험방송 전파발사를 실시하였다.

마. 시장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

1)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배경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자원으로 보유량 및 사용형태에 따라 국가경제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주파수 할당의 참여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기존의 주파수 대가할당을 위한 심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허가 심사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져 전파법상 대가할당 심사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적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주파수를 「대가할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전파법상 할당심사기준이 없었다.

또한 융합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정부주도의 주파수 가치산정이 어려워지고 시장에 의한 주파수 가치 결정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주파수 할당제도 정비를 위한 전파법 개정('08. 6. 13)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대가할당의 심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업법상

사업허가 심사기준과 전파법상 주파수 심사할당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대가할당과 심사할당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를 사전승인사항으로 개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제도를 개선하여 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가 아닌 「할당취소」의 요건으로 하여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파수를 신규로 할당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은 할당시점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경매)로도 할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전파법 개정안 마련하였다. 주파수의 헐값 낙찰방지를 위해 최소 경쟁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할당신청자는 최소경쟁가격의 10%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경매 참여에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경매대금은 현재 제정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 및 지속적인 설비투자 유도 등을 위해 대가할당이나 심사할당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2) 무선국 운용 규제 완화

가) 현황 및 배경

무선국은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와 함께 전파관리의 핵심요소이다. 2008년 9월 현재 98만국의 무선국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파이용의 보편화로 무선국 관련 산업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비성능 개선으로 수신기의 수신감도 향상, 전파이용 보편화로 무선국 수 증가,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전파혼신 가능성 증대, 전자파·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등 전파환경변화에 따라 무선국 운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점이다.

나) 추진경과 및 성과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신고대상 무선국 확대를 추진, 2008년 6월 20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를 종전 대가할당 사업자의 경우 “신고”, 심사할당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되던 절차를 신고절차로 일원화하였다. 이동전화, PCS,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을 신고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만,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파수공용통신·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은 허가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은 휴대용 무선기기의 경우 혼신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완화시키도록 하였다(전파법시행령 개정 2008. 12. 14. 시행).

둘째, 무선국 허가·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전파법시행령 개정(2008. 12. 14 공포)을 통하여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방송국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무선국에 대하여 허가·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기술발전으로 내구성이 향상된 무선국에 대한 허가·검사 규제 합리화 도모하였다.

셋째,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되는 무선국으로서 전파혼간섭 우려가 적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표본추출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파법 개정안에 마련하였다(2009. 1월중 국회 제출예정). 2009년도에 표본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파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3)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

기기의 성능과 품질 향상, 제조자의 관리능력 제고, 기기 융복합화 등 방송통신 기기의 이용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휴대폰 배터리 폭발 등에 따른 기기 안전 문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이용자 관심과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인증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통신망에 대한 위해 및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으나,

① 민간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과 정부(전파연구소) 인증이라는 이중적 절차

를 따르고 있어 처리기간 지연 등 제조·수입업체에 부담, ② 제품의 특성·위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증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제품의 조기시장 출시를 가로 막아 업계의 시장경쟁력 저하, ③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인증하기 위한 기준 및 제도 미비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1) 인증절차 간소화

이에 위원회는 기기의 위험정도·불량률·인명안전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평가(시험·인증)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인증유형을 ① 정부가 기기의 적합성을 평가·확인하는 적합인증과 ② 제조자가 스스로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등록으로 개편하고, 위험정도가 낮은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증 심사 및 인증서 발급 절차를 면제 하도록 하였다.

(2) 잠정인증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망, 전파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인증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잠정인증을 받은 기기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설치지역 등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3) 사후관리 강화

위와 같은 인증절차 간소화, 잠정인증제도 도입 등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규제 관련 규정 강화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적합등록을 한 자에 대한 기술문서 보관 의무화, 방송통신기기 제조·수입자 등에 대한 자료 열람, 기기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4) 기대효과

지정시험기관에서의 시험, 인증심사 등의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간은 최대 30일, 비용은 건당 70~180만원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합등록 시행 시 건당 인증비용 약 30만원, 시험비용 약 40~150만원(자체 시험장

을 보유한 제조업체의 경우)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생명주기가 짧은 방송통신기기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시험·검사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적기 출시 및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절차에 따르면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기술기준 제정이 완료(평균 6개월~1년)될 때까지 대기해야 했으나, 잠정인증제도 도입 시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3) 향후 계획(Vision)

향후, 불필요한 사전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EMC, 전기안전 등 인증기준은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불법·불량기기 유통 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다.

4.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가. 인터넷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

1) 인터넷 침해위협으로부터 안전성 제고

가) 현황 및 배경

최근 해킹, 바이러스유포 및 서비스거부(DoS)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같은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① 전통적 유형의 단순 해킹 및 바이러스는 감소한 반면, 악성코드 유포, 웹해킹 및 무선해킹 등 침해사고는 다양화, ②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DDoS 침해사고 증가, ③ 악성코드의 신·변종 출현이 급격히 증가, ④ 침해사고에 대한 국가 간 대응협력체계 강화 필요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 - 35〉 해킹·바이러스 신고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1월
웹·바이러스	16,093	7,789	5,996	8,005
해킹	33,633	26,808	21,732	14,813

나) 추진실적 및 성과

(1)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

2008년 7월 22일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인터넷침해사고, 개인정보보호, 유해정보 대응,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4대 분야에 총 50개 과제 선정하였다('10년까지 380여억원 투입). 2008년 11월, 12월에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내실화를 위한 정보보호정책포럼 운영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부처기능 조정과 법령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령 정비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국내 인터넷 이상 징후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초동 대응, 온라인 배포 프로그램(ActiveX) 취약점 위협 예방 조치, 허위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악성봇 감염률 감소를 위한 피해 예방 활동, ISP, IDC, 쇼핑몰 등 232개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안전진단 시행 등을 수행하였다.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LG파워콤 등 3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지정 대상기관에 대해 지정 대상 시설의 범위, 지정요건 및 절차, 자체평가 방법 등 기술지원('08. 11월)하고 KT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3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중간 이행 사항에 대해 점검하였다('08. 12월).

(4) 정보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안전진단 대상업체 중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취득업체 안전진단 면제기간 확대(1년→3년)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

(5) 신규서비스 보안대책 마련

인터넷전화(VoIP), IPTV 및 무선랜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및

침해대응 기술 개발하고('08년 9월), 『인터넷전화 보안통신/세션 제어 기술』의 산업체 기술 이전(3건) 및 상용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유도를 추진하였다.

(6) 국내·외 침해사고 협력체계 구축

침해사고 정보수집 대상을 2007년 114개에서 2008년 154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조사단 전문가 구성하였다('08. 9월, 3개 85명). 또한 2008년 9월 개발도상국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아태 정보보호교육 실시하고, 10월에 호주와 APEC-TEL 『VoIP Security Guideline』 공동개발 및 배포하였다.

(7)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 강화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1,520건, 공개 웹방화벽 기술지원 657건, PC 원격점검서비스 1,492건 등을 시행하였으며, 중·소규모 IT서비스 기업의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 위험관리, 보호대책 수립 등 총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인포뱅크, KIS정보통신 등 50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시행하고, 후이즈, (주)컴투스 등 55개 기업에 위험관리, 보호대책 수립 등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08. 12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설정, DDoS 대응, 스팸 및 바이러스 대응 등과 관련하여 중·소규모 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가이드』를 개발하였다('08. 10월).

다) 향후 계획(Vision)

향후 인터넷 이용자와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중심의 정보보호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예보체계를 신규로 구축하고, IPTV, VoIP, 무선망 환경에서의 신규위협에 대비한 S/W 안전·신뢰체계 마련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보안인식 제고, 사회 주체별 실천력 개선, 이용자 맞춤형 교육·홍보 확대 등 범국가적 정보보호 인식확산 및 문화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배경

최근 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무단 이용 및 제공과 같은 개인정보 유·노출, 오

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로 하나로텔레콤에서 고객 개인정보 600만건 무단이용('08. 4월 경찰발표),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개인정보 상담·신고 접수건수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유형은 관리 소홀, 내부자 고의행위 등에서 해킹 등 기술적 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추세이다.

(그림 III - 7) 개인정보 침해사례 현황



나) 추진실적 및 성과

(1)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포털 등의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감소시키고(정보통신망법 개정('08. 9월), 수집한 정보도 암호화하여 저장도록 한다(고시개정, '08. 6월). 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로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시 이용자 통보를 의무화하였다(정보통신망법 개정, '08. 9월). 2008년 10월 정보통신망법 개정(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사업자의 처벌강화 및 주민등록 이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의무화 등, '08. 5월)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하였다.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부처기능 조정과 법령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령 정비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08. 11월).

또한 개인정보 DB 대량 보유 사업자 대상 집중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를

통해 인증제도 세부계획안 및 심사항목 초안을 작성하고('08.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조항 반영하였다.

(2)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기술적 대응 강화

개인정보 DB 대량 보유 사업자 및 유출사고 발생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초고속인터넷사(5~7월), SO 및 포털 8개사(9월), 이동통신 3개사(10~11월) 등 15건 수행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하나로텔레콤('08. 6월), (주)KT 및 (주)LG파워콤('08. 8월)의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집행하였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12월 동안이용자 수 상위 웹사이트 2만여개 대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모니터링하고, 17,869개 위반사이트 중 10,010개(56%)를 개선하였다.

한글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 및 삭제 추진과 관련하여 구글과 핫라인 운영(3회), 삭제기간 단축, 삭제 요청방법 공동 홍보 등 6개 사항 합의하고('08. 9월), 사이트 관리자페이지 노출 원인 분석 및 컨설팅(500건), 로봇배제 표준 권고(3,000건), 노출업체 대상 예방 교육(200회), 대량 노출 건 대상 원 사이트 삭제 강화(상시) 등을 통해 910건('07. 12월)에서 626건('08. 11월)으로 노출 감소 성과가 있었다.

국의 사이트 노출 점검 및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중국어(중국, 대만) 및 영어 사이트 대상 구글 검색(격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사이트 구글 점검('08. 8월~), CIIA(중국정보산업협회) 및 주요 3대 포털 사업자와 노출 개인정보 삭제 협조 협의, 일본 IPA(정보처리추진기구)와 핫라인 구축 협의('08. 10월)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송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보안서버 보급 확대하였다. 단, 일일방문자 500명 이상의 웹사이트(3만여개) 등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되 2009년 이후 영세쇼핑몰 등으로 확대('07년 21,083대 → '08년 33,000대 → '10년 50,000대)할 계획이다. 2008년 3월에서 10월까지 일방문자수 상위, 상장사 등 2만5천개 국내 주요 사이트 실태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고 2008년 6월에는 웹사이트 개발시 보안서버 구축을 유도하는 사전 점검체계 구축 방안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인터넷상 본인확인수단(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명의도용 방지를 추진하고 있다.

(3)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인터넷기업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윤리강령·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 적극 권고하고('08. 6월), KADO와 연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총 195개교('08. 9월 기준)의 초·중·고생, 학부모, 교원, 공무원 112,788명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10계명 제작 및 배포하였다. 반사회 홍보자료 배포('08. 5월), KAD, 주최 건전정보문화 캠페인시 배포('08. 6월, 수도권 외 4개 권역), KAIT, KTOA, KOLSA 등 5개 협회와 협력하여 총 323개 회원사 대상 배포('08. 5월), 보안뉴스 등 언론사에 홍보자료 제공('08. 6월) 및 머니투데이 주최 「u-Clean Concert」 행사시 배포('08. 11월)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 10월 KAIT, KTOA, KOLSA 등 5개 협회와 협력하여 약 6백만명 참여한 가운데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 전개하였다.

(4) 개인위치정보 보호체계 합리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체계 합리화의 일환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 방법 개선안(즉시 → 정보주체 선택) 등을 골자로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위치정보보호 전용 웹사이트 개설('08. 6월)하고,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 향후 계획(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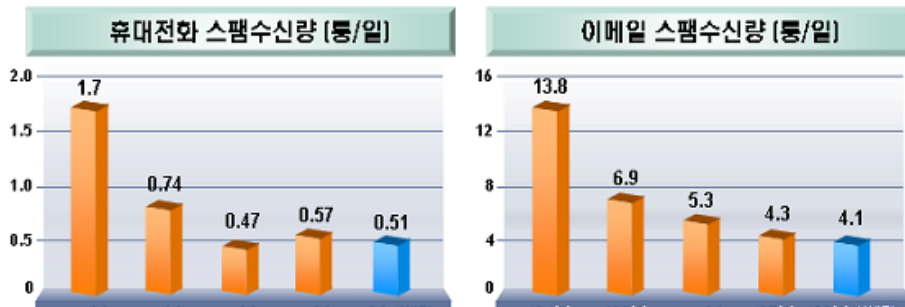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영역, 보호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법체계를 정립하고, 기업의 정보유출방지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과 고객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전사적인 위험관리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IT 컴플라이언스 준수 강화 유도할 방침이다.

3)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가) 현황 및 배경

휴대전화 스팸은 타 매체에 비해 즉시성이 강해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나므로 스팸머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법률 예외조항을 악용하거나 명의도용, 발신번호 위·변조, 회신번호 착신전환 등 은밀·교묘한 발송기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메일 스팸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였으나, 전송기법은 갈수록 지능화, 국제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림 III - 8]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추이



한편, 음란, 명예훼손 및 도박 등 불법정보, 친북 등 국가안보 및 기타 범죄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치현황은 <표 III - 36>과 같다.

<표 III - 36>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치현황

(단위: 건)

구분	1995	1998	2001	2004	2005	2006	2007
심 의	2,032	17,108	25,210	69,292	119,184	156,734	216,224
시정요구	598	12,682	21,502	34,035	42,643	44,289	112,220

나) 추진실적 및 성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및 P2P 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관리실태 조사('08. 6~7월)를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P2P 사업자 등의 자체 유해신고센터 운영, 음란물 차단시스템 도입 등 불법정보 관리실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으로 ‘아름다운 댓글달기’ 등 다양한 건전윤리 캠페인을 전개하여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확산하였으며(’08. 9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 특강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학부등과 협의하여 정규교과과정으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였다(’08. 7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 신고 자원봉사단인 사이버패트롤 운영 활성화하였다(’08년 500명).

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자 위주의 처벌에 치우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하였다(’08년 하반기). ’08년 11월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부처기능 조정과 법령 선진화를 위한 유사법령 정비방침에 따라 그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핵심적으로 ① 포털, P2P 사업자 등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와 함께 불법정보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시 처벌할 것과, ②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시조치(블라인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불법 스팸규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전화·팩스 광고시 사전수신동의(Opt-in) 의무 예외규정 축소,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에 대한 수집·제공 근거규정 마련하는 한편,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SMS 발송량 1일 1천통 제한, 불법스팸 전송자 과금제한, 계약 해지된 스팸어의 1년간 재가입 금지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휴대폰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접속 유도 불법스팸에 대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시행하고, 이통사 및 과금서비스제공자 대상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KISA-사업자간 과금제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75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해 스팸으로 인한 발생과금 취소 및 서비스 이용정지·계약해지하였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박스팸 신고건에 대한 기초 사실조사 강화 및 정보제공을 통해 중앙전파관리소의 집중단속 수사 지원하고, 이통사의 음성스팸 탐지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원링스팸 정보를 공유하여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해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메일 스팸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 보급 「메일서버등록제(SPF)」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²⁾

〈표 III - 37〉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 보급현황

연 도	'06년	'07년	'08년(1~8월)
보급기관수(누계)	533	2,279	2,403

〈표 III - 38〉 「메일서버등록제(SPF)」 적용현황

연 도	'06년	'07년	'08년(1~8월)
적용기관수(누계)	3,450	11,040	17,017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불건전 정보유통방지 기반 조성을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 및 본인확인제 보완, 불법정보 관리 실태 조사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가)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정보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전국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04년부터 기존 초고속정보통

12) RBL(Real-time Blocking List)는 실시간 스팸발송 정보를 취합·분석·확인하여 생성 및 배포하는 IP 기반의 등급별 차단리스트를 말한다. SPF(Sender Policy Framework) 이메일 발신지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스팸을 차단하는 인증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신망보다 50배 이상 빠른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하여 IPTV, 인터넷영상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I - 39〉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BcN 포함)

구 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 5월
가입건수	1.4만	387만	1,0401	1,192만	1,404만	1,471만	1,505만

그간의 네트워크 고도화 노력은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는 구축이라는 성과를 낳았으나, 인터넷영상전화 등 BcN 서비스의 사업자간, 이종망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속도, 해상도 등 품질제고 및 농어촌지역의 경우 수익성 부재로 사업자들의 BcN 구축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방송통신·유무선 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의 가속화와 신규 융합서비스 출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 고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망(BcN¹³⁾)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인터넷 영상전화 등 다양한 BcN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BcN 서비스 연동 규격 제시 및 표준화 추진('08. 11), ② 인터넷영상전화 및 IPTV의 속도, 해상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S/W 개발·보급('08. 12), ③ 신규서비스(IPTV, Wibro,¹⁴⁾ HSDPA¹⁵⁾ 등)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품질측정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제도 마련, ④ 농어촌 지역 BcN 구축을 위한 '09년 대상지역(약 9만세대) 선정 및 예산확보(120억원) 추진하였다('08. 12).

13)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음성·데이터, 유·무선 등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 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14)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

15)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고속하향패킷접속을 통해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나 CDMA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3.5세대 이동통신방식

〈표 III - 40〉 연도별 BcN 보급 목표

(단위: 만)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가구수	701	920	1,100	1,200
무선 가입자수	563	1,210	1,730	2,300
합 계	1,264	2,130	2,830	3,500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을 위해, '08년 하반기 『방송통신망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08~'12년) IPTV 등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비전 및 전략제시하였다. 『방송통신망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간의 실적 평가·분석, 추진전략, 서비스모델 발굴,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BcN(50~100Mbps)보다 10배가 빨라 3차원 영상회의 등 대용량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기가인터넷 서비스』 도입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구축을 위해 국내 6개 대도시 지역에 연구개발망 및 연구시험환경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APEC, ASEM 등 지원) 추진을 위한 국제연구망 연동,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91개 기관을 기가급 회선으로 상호 연계를 통해 향후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All-IP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유무선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08. 10), 유무선 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08. 11), IP-USN 통합 시험환경 구축·운영하였다('08. 12).

다) 향후 계획(Vision)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품질·대용량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자의 위치와 단말에 상관없이, 끊김없고(seamlessly) 안전하게(safely) 이용할 수 있는 All-IP 기반의 지능형 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선의 경우 Giga 네트워크(가구당 100Mbps~1Gbps), 무선은 4세대 네트워크(기지국/셀/FA 당 최대 50~100M급 수준) 구축하고, 다양한 유·무선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 단일 기반 이중망간 끊김없는 이동성(mobility) 제공하며, All-IP 기반으로 음성·데이터, 유·무선, 통신·방송 및 센서망이 통합된 융합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인터넷 이용 활성화 지원

가) 현황 및 배경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07년말 기준 3천5백만명(6세이상 기준 77%)으로서 네덜란드(1위, 91%), 노르웨이(2위, 83%)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최근 1개월이내 인터넷 이용, 도시국가 제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인터넷 주소할당 기구(ICANN)로부터 '08년 9월말 기준으로 6,611만개의 인터넷주소를 확보하고 이중 74.1%를 사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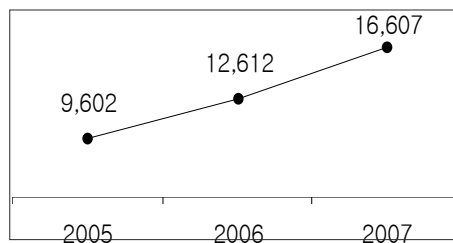
인터넷 환경의 중심이 되고 있는 포털사는 별다른 규제 없이 하루 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최근 뉴스제목 수정을 통한 여론 조작, 부정클릭에 의한 광고 수입 등 포털서비스의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 Ⅲ-41>와 [그림 Ⅲ-9]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41> 인터넷 이용통계

구분	일평균 방문자수(만명)
전체	5,788
NHN(네이버)	1,421
다음	1,184
SK커뮤니케이션	1,568
KTH	241

자료: 인터넷진흥원(2008. 11)

[그림 Ⅲ-9] 4대포털사의 매출 추이



자료: 각사 IR자료 참조

한편, 인터넷주소와 관련되어, 최근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여 인터넷주소 자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현 인터넷 주소는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도 '13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며, 무선인터넷의 경우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접속이 이통사의 포털에만 쉽도록 되어 있고, 이용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늘어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의 미디어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08. 7월). 특히, 검색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해서 누구든지 검색결과, 검색내용 또는 검색결과가 제공되는 위치 등을 변경·삭제하거나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검색 순위 서비스 제공시 특정 IP에서의 반복적인 클릭 방지, 블랙리스트 확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인터넷 매체사업자(포털 등)에 대하여 검색결과 제공시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이용의 핵심인 인터넷주소자원의 부적합한 활용을 방지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합리적 할당 및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IPv6) 보급 확대를 위해 중장기 인터넷 주소자원 기본계획 수립하였다('08. 12월). 동 계획은 현 인터넷 주소자원 수급 현황 및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 등을 고려한 인터넷 주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인터넷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체계를 개선하였다. SKT는 하나로통신 M&A 인가 조건을 통해 개선하였고, KTF, LGT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무선인터넷 숫자 주소인 WINC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1)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

가) 현황 및 배경

방송통신 경쟁 활성화, 사전규제 완화 등에 따라 통신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유형도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실조사 위주의 피해구제 등의 방법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해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사후적 피해구제 위주의 이용자보호 활동에서 벗어나 이용자 참여 활성화와 정보제공을 위해 알기 쉬운 이용약관과 접근성, 경품 피해 예방, 불공정 약관 개선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자보호 시책 수립·추진 필요하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하였으며,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환경 속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품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여전히 높고,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 기준인 업체의 최저보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론상 최고속도가 실제 속도처럼 광고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 존재한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약관 게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2008. 8. 12). 이용자 약관 게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9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CS(Customer Satisfaction)센터,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 발생 496건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이용계약서 및 민원사례 등 분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2008. 10. 28). 동 가이드라인은 명확한 고지없이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중도해지 사유가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임에도 경품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대 사업자의 불공정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수정 및 삭제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2008. 12. 5). 불공정 약관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범위 등 불명확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 - 42〉 5대 통신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및 개선내용

구 분	문제점	개선
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서비스 일방적 중지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통지 방법을 추가토록 개선
개인 정보	고객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의 불명확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조항 수정
자동 연장	약정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	약정계약 만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확대
계약 철회	이용계약의 철회사유 제한	이용계약 철회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
사업자 손해배상	게시물 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면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
위치기반 서비스 피해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 손해발생시 책임범위 제한	법률의 규정대로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관할법원	관할법원 제한	관할법원 제한 삭제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종합

초고속 인터넷 품질평가 및 최저보장속도 상향 조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07. 12.~2008. 4.동안, 2007년도 초고속 인터넷 품질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2008년 6월 12일에 발표했다. 동 조사는 품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7개 사업자¹⁶⁾의 13개 상품을 대상으로 기

술적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상품별 다운로드/업로드 평균속도는 광고 최고속도의 75% 이상 수준이고, 이용자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초고속인터넷 품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품질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2008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계획에 반영하였다.¹⁷⁾

〈표 III - 43〉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기술적 평가 종합 결과

서비스명		광고 최고속도 (Down/Up)	평균속도(Mbps)		지연시간 (ms)	손실률 (%)	광고최고속도 대비 비율 (Down, %)
			다운로드	업로드			
100M	KT 엔토피아	100/100	87	84	2.6	0.01	87
	하나로텔레콤 광랜	100/100	78	71	5.7	0.01	78
	LG파워콤 Xpeed 광랜	100/100	91	88	3.0	0.00	91
50M	KT 프리미엄 VDSL	50/10	35	7	2.7	0.01	70
20M	하나로 프리미엄 HFC	20/0.768	13	0.7	2.7	0.01	65
10M	KT 라이트	10/0.64~10	8.9	5.1	8.4	0.03	89
	하나로 스피드	10/0.64~4	8.9	1.3	13.9	0.09	89
	LG파워콤 Xpeed프라임	10/0.8	9.6	0.8	10.5	0.02	96
	티브로드 파워	10/1	7.8	0.8	12.4	0.04	78
	(주)씨앤엠 맥스	10/1	7.8	0.9	11.0	0.05	78
	CJ케이블넷 헬로우넷 라이트	10/2	9.0	1.8	12.8	0.63	90
	HCN 하이로드	10/1	7.6	1.0	14.1	1.54	76
4M	(주)씨앤엠 스피드	4/0.5	3.9	0.5	11.6	0.13	98

주: 신뢰수준 9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6)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티브로드, 씨앤엠, CJ케이블넷, HCN(10만명 이상 가입자가 많은 순으로 선정)

17)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지속적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도 품질평가는 초고속인터넷 7개 사업자 12개 상품에 대해 실시될 계획이며, 학계·소비자단체·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품질평가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문 업체와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표 III - 44〉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의 객관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회사명	신규 고객			해지 고객			AS 경험 고객	
	이용계약서 교부여부	개통예정일 준수여부	요금납입방법 선택가능여부	해지절차 용이정도	해지요청일 준수여부	해지후 불편사항 비경험 여부	수리예정시간 준수여부	이용중지 사전고지 여부
KT	86.9	98.8	95.2	90.8	98.2	97.5	97.2	77.1
하나로텔레콤	84.5	97.2	95.4	88.8	93.7	90.5	94.9	60.7
LG파워콤	86.7	98.4	94.7	78.8	87.5	76.4	94.0	71.7
티브로드	93.5	99.1	90.8	63.4	83.3	82.9	95.3	70.1
(주)씨앤앰	87.8	97.4	94.0	84.0	91.9	89.9	88.2	54.7
CJ케이블넷	95.3	99.3	95.0	78.5	90.7	86.8	94.2	79.9
HCN	91.0	98.6	95.5	85.9	91.8	84.2	95.0	70.0
전체	89.4	98.4	94.4	81.4	90.9	86.9	94.1	69.1

주: 총 8문항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답변을 구성하여 “예”로 답변한 비율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대한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¹⁸⁾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주요 7개)의 이용약관상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최고속도의 1~10% 수준에서 5~50% 수준으로 큰 폭 상향 조정하였다(해당 기준 미달 시 이용자는 보상 요구 가능).¹⁹⁾

〈표 III - 45〉 사업자별 최저 보장속도 개선 내용

(단위: Mbps)

사업자	서비스 상품	최고속도	변경전('08. 6.) 최저속도	개선 계획		비고
				최저속도	변경시기	
KT	라이트	50	1	5(FTTH) 1(xDSL)	('08. 12)	

18) 2007년 품질평가 결과(2008. 6. 발표): 다운로드 평균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이상 수준이나, 최저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1~10% 수준

19)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저보장속도의 적정 수준을 100Mbps급의 경우 30Mbps, 10Mbps급의 경우 2Mbps로 제시한 바 있음

사업자	서비스 상품	최고속도	변경전('08. 6.) 최저속도	개선 계획		비고
				최저속도	변경시기	
KT	스페셜	100	5	30	('08. 12)	
SK브로드 밴드	스피드	10	1	1.5	('08. 12)	2('09. 10.)
	광랜	100	5	30	('08. 8)	
LG파워콤	프라임	10	1	5	('08. 12)	
	광랜	100	30	50	('08. 12)	
티브로드	파워	10	0.5	1.5	('09. 3)	
	파워프로	15	1	2	('09. 3)	
	파워프리미엄	20	1	3	('09. 3)	
	광랜프로	50	1.5	7.5	('09. 3)	
	광랜프리미엄	100	1.5	15	('09. 3)	
C&M	스피드	4	0.5	1	('08. 12)	
	맥스	10	1	2	('08. 12)	
	광랜	100	1	30	('09. 3)	
CJ헬로비전	라이트	10	0.5	1	('08. 7)	1.5('09. 7.)
	프라임	20	1	3	('08. 7)	
	광랜	100	3	5	('08. 7)	30('09. 7.)
HCN	라이트	10	1	1.5	('08. 10)	
	프리미엄	100	1.5	5	('08. 8)	
	광랜	100	1.5	30	('09. 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08년도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을 개최(12. 9~10)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3회(2008. 8. 12, 2008. 10. 28, 2008. 12. 10) 개최하였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피해사례 및 해결방법 등을 만화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콘텐츠는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 95개개 기관에 배포하여 통신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였다.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이용약관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알기 쉽고, 찾기 쉬운 방송통신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게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며, 부당한 약관 조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시민단체,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당한 약관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공정 약관 개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하고, 이용약관 및 민원 분석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규정 및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 품질 지속적 개선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평가 강화와 최저보장속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가) 현황 및 배경

경쟁촉진과 시장활력 제고를 위한 사전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사후규제의 중요성 증대하고 있으며, 결합판매 규제완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도입 등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공정행위의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시장 감시체계는 통신사업자들의 신고 위주의 조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한정된 조사,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처벌 위주의 위반행위 제재방식을 주로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시장질서 확립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말기 불법보조금,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의 경우 반복되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계속 재발하는 등 사후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및 감시를 통해, 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 부과했다(2008. 8. 25).²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20) 동 조치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TM(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2008. 5. 19)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²¹⁾의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망이용대가 지급 불공정 행위 조치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간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망 이용대가 과소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처리(2008. 7. 15)하고,²²⁾ LG텔레콤과 KT간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망 이용대가 과소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처리(2008. 7. 15)하였다.²³⁾

〈표 Ⅲ - 46〉 '08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현황(2008. 9월 현재)

구 분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전용회선	합 계
시정조치(건)	8	6	5	2	21
과징금(억원)	28.5	5.8	3.6	0.6	38.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다) 향후 계획(Vision)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 감시·예방을 위해 각 서서비스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여 사업자의 법 위반상태를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할 것이며, 반복적 법 위반 및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증액, 영업정지 등 제재수준의 강화토록 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21) 결합판매: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2) 방송통신위원회는 KT는 SK텔레콤에게 미지급된 망 이용대가(262억여원) 및 이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다.

23) 방송통신위원회는 KT는 LG텔레콤에게 미지급된 망 이용대가(95억여원) 및 이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다.

3)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가) 현황 및 배경

현재 통신시장은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결합서비스의 출현과 부가서비스의 활성화로 민원의 유형이 복잡·다양해짐은 물론, 정보매체(인터넷 카페 등)의 활성화에 따른 집단화 경향 등으로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분야 통합으로 원활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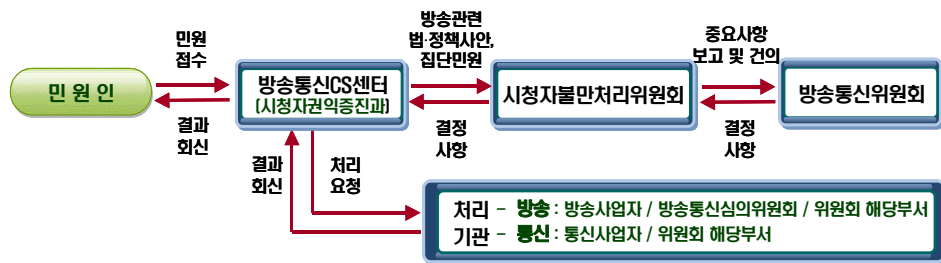
〈표 Ⅲ - 47〉 통신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민원 접수	26,496	40,699	36,431	42,858	28,934
민원 처리	26,194	40,470	36,648	42,836	29,121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처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방송통신민원 통합처리체계 구축계획을 확정했으며(2008. 8. 5), 이를 통해 방송통신 민원서비스의 최초 접점인 CS센터에서 시청자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증진될 수 있도록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합·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림 Ⅲ - 10〕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신 민원 동향 분석을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였으며(2008. 5.), CS센터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상담직원 그리고 해당 방송통신사업자가 동시에 통화 할 수 있는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해당 민원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2008. 9.).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해왔으나, 콘텐츠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규제 효과가 미흡하여 요금결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유무선 전화결제²⁴⁾ 이용자 피해 제거 및 방지 목적을 목적으로,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 출범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2008. 7. 16).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는 전화결제 서비스 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불량 사업자로 등록하여 전화결제 서비스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중심의 이용자 피해 상시점검 체계 운영을 통해, MSO 및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위반 행위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며(2008. 11. 17),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거나,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위법한 개인 정보관리 사실을 확인하고 총 2억원의 과태료 부과하였다.

다) 향후 계획(Vision)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민원해결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 민원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방송통신 분쟁조정 법제도 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4) 유무선 전화결제란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결제 대금을 이동전화나 유선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가해 징수하는 대행 서비스

4)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

가) 현황 및 배경

최근 사업자들은 대형 로펌을 통해 전문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고 사건 자체도 다수 역무가 관여되는 등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사업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통신분야의 금지행위는 포괄적이지 못하고, 방송분야는 금지행위 제도 자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융합분야는 IPTV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시급하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2008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아래와 같다.

- ① 하나로텔레콤(주)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2008. 6. 20) :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1억 4천8백만원 부과
- ②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유선전화 3사에게 불법스팸 전송차단 강화 시정명령 조치(2008. 9. 25) : KT,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각각 시정 명령 부과
- ③ LG데이콤에 대한 전국대표번호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재정(2008. 7. 15) : 가입자가 LG데이콤에게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일시정지(6개월) 후 연장신청은 이용약관상 일시정지 연장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LG데이콤의 업무처리 과정의 위법성이 없어 신청인의 청구 기각 의결
- ④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²⁵⁾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시정조치(2008. 8. 7) :

25) T-Ring 서비스: 약 1.7초의 멜로디(땡땡 땡땡땡, 솔미 파라솔)로써 부가서비스로 출시되기 이전부터 방송등 매체에서 피싱인의 대표브랜드 "T"를 홍보하기 위해 널리 이용

SK텔레콤이 자사브랜드인 T-Ring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없이 동 서비스에 자동 가입시킨 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원 부과 의결

⑤ 한국인포데이터의 우선번호안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2008. 7. 15): 한국인포데이터의 가입자격 조건 위반, 가입업체 선정기준 위반 및 가입업체간 불균등한 호 분배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즉시 중지 및 과징금 2,200만원 부과 등 의결

⑥ 별정통신사업자인 베스트제이와이의 원링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2008. 10. 1): 베스트제이와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전국대표번호서비스에 가입하고 협력업체인 슬론텔레콤에게 전국대표번호와 통신장비의 조작 권한 등 재부여하였으며, 협력업체 슬론텔레콤은 2008. 7월 한 달 동안 하루 만건씩 원링스팸을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이용자에게 총 379,307건(34,790,796원) 불법²⁶⁾ 과금,²⁷⁾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한 ① 금지행위의 중지, ②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동 법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의한 ③ 과징금 500만원 부과 의결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조사체계 확립·강화를 위해 조사인력 전문성 확보 및 조사기법 개선, 방송통신 시장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및 시장조사 체계 강화, 방송통신사업자 회계정보 DB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과 방송 분야 금지행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지행위 규제에 있어 공정위원회와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6) 슬론텔레콤이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부당한 통화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결정

27) 이용자가 전화를 걸면 슬론텔레콤은 통신장비를 조작하여 통화연결음(“뚜~뚜~”)을 송출하여 이용자가 통화가 시작되었음에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혼돈하여 통화를 끊지 않게 하여 통화요금 발생 초래

라.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1)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가) 현황 및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청자의 주권 의식 확대를 위해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시청자 권익 신장 위해 2000~2007년 동안 시청자단체의 유해방송 감시, 미디어교육·방송모니터링·시청자캠페인 등에 총 62억원 지원했다. 이는 시청자의 주권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방송편성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시청자의 직접 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시청자참여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시청자의 의견이 방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방송이용 문화의 확산이라는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2007년도 시청자 불만 접수 건수는 6,999건으로 시청자불만처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만처리 감소 및 시청자 권익 보호 확대 필요하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최근 디지털 방송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방송매체의 등장으로 다채널·양방향화로 진화하고 있는 방송환경에 맞추어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2008년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및 시청자 단체 활동에 40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표 III-48〉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비 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3,142	KBS(416), SO 및 지역지상파(1,307), 위성방송(1,399)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	930	미디어교육(500), 방송환경조사(200), 정책개발(230)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소수계층의 의사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2008년도에는 종전대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시민방송에게 직접 지원하되, 제작지원

금은 20% 감액(2007년 7억원 → 2008년 5.6억원) 지원²⁸⁾ 하는 등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방식 개선했다.²⁹⁾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시청자 권익정책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기능중복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분야를 조정하였으며(미디어교육, 방송모니터링, 캠페인, 기획사업 → 미디어교육, 방송환경조사, 정책개발 분야), 역량 있는 신규 단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충실한 사업수행을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³⁰⁾ 과제수행 방식을 자유공모에서 지정공모로 변경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불만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출범하였다(2008. 9. 26).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내용 심의 제외),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방송기술 및 난시청에 관한 사항 등 시청자의 불만을 해결, 및 심의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제재조치, 약관변경명령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2008. 1. ~ 9.에 실시된 시청자 불만 현황 조사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시청자 불만 현황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전체 2,960건 중 위성방송이 1,230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 1,175건(40%), 지상파방송 263건(9%), 방송채널사용사업 11건의 순이었으며, 일반 국민들이 방송서비스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은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요금과 위약금에 관한 것으로 전체 불만 2,960건 중 약 43%(1,266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28) 2009년부터는 지원금을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채택은 비공모제에서 공모제로 전환 추진

29) KBS가 자체적으로 공모하여 채택·방송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속 지원

30) 지원자격 요건 중 “1년 이상 시청자 권익증진 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의 기준 삭제하고, 신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단체의 전문성 확보 지표를 추가하고, 관련 대학교·학회 등과 컨소시엄 구성 여부 반영

31) 기타, 케이블 TV 방송사업자들이 기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체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발생한 요금인상 관련 불만이 전체의 21.8%, 유료방송의 경쟁 격화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비롯된 위약금 관련 불만이 20.9% 등으로 나타났으며, 유료방송에서 특정 인기 채널을 고가 채널상품에 편성하는 등의 채널편성·변경 관련 불만 259건(8.8%), 해지 곤란 불만 246건(8.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다) 향후 계획(Vi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매체 등에 대한 접근권을 넓혀 시청자의 방송주권 신장에 기여하고, 시청자운동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기회 확대 및 미디어 교육 내실화

가) 현황 및 배경

디지털화의 진전과 뉴미디어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과 시청자 방송제작 참여 기회 및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2008. 4. 11)됨에 따라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전 부처로 확대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방송사업자 등의 영세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일부 제한될 우려가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2007년 동안 장애인·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총 129억원 지원했으며,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미디어 교육에 있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 전문가 양성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나) 추진실적 및 성과(기대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방송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접근 보장 수신 보조기기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³²⁾ 2008년에 자막(5,000대), 화면해설(5,000대), 난청노인용(9,000대) 방송수신기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³⁾ 또한, 2008년 중 장애인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원(26개 사업자 27개 채널) 및 편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으며, 장애인 미디어센터(서울 1개소)의 방송 교육과정 지원 및 시청자 미디어센터(부산, 광주 2개

편승하여 디지털케이블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된 영업행위 불만 41건(1.4%)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2000~2007동안 총 74.8억원을 지원, 총 8.52만대의 방송수신기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3) 자막방송 수신기 누적보급대수(보급률)은 2007년 25,087대(12.2%)에서 2008년 30,087대(1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를 통한 장애인의 방송제작을 지원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자막·화면해설 EBS 수능 방송물을 보급하여 장애학생의 학습 기회 확대하였다(2008. 7.~).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수립을 통해 (2008. 6.), 2008년에도 수혜대상 확대 및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복지향상과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방송 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장애인의 방송접근 제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I - 49〉 2008년도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내용

구 분	금액 (억원)	사업 주요 내용
방송소외 계층 방송접 근권 보장	24	○ 자막(5,000대 이상)·화면해설(5,000대 이상)·난청노인용(9,000대 이상) 방송수신기 보급 ○ 시·청각 장애학생 대상으로 자막·화면해설 EBS수능 방송물 4과목 이상 제작·보급(DVD와 웹방식) ○ 기타 장애인 방송접근권 증진: 가능한 창의적 기획사업 지원
장애인 대상 방송제작 지원	30	○ 지상파 4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제작지원 ○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수화방송 제작 지원 ○ 각 방송사의 장애인 프로그램 방송 홍보 지원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제작	3	○ 중학생용 미디어 교육교재 개발 ○ 미디어교육아카이브 업데이트 및 운영
미디어교육 활동지원	2	○ 초·중고 미디어교육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자녀 대상 공부방 방송기자재 및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중독 예방활동 지원

다) 향후 계획(Vision)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

립을 통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취약한 방송접근 기회를 해소하고 방송활용능력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방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새 운영방안 마련·체계적인 운영 프로그램 추진으로 센터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도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연구로, 주요 선진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연차보고서를 검토하고,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해외 주요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연차보고서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FCC의 연차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는 개정된 통신법에 의거하여 국내외 시장의 정책적인 문제, 위원회 업무 성과, 보유 인력과 시설의 적절성,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기금 내역 등, 그리고 새로운 입법의 잠재적인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Sec. 4). FCC의 연차보고서 중 프로그램 성과 및 재무제표와 감사보고는 국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보고서, 국가재정법의 결산보고서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영국의 Ofcom은 ‘Ofcom 설치법’(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c. 11))과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c. 21-3-(10)))에 의거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Ofcom은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연초에 당해 연도의 우선적인 정책 과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성과 보고 내용을 연차 보고서에 기술한다. 또한 재정 관련 사항을 여러 장에 걸쳐 다각도로 보고하고 기관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셋째, 호주의 ACMA는 ‘2005년 호주 통신 및 미디어법’(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의 제57조와 ‘각 기관의 연차보고서 발행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The Requirements for Annual Reports for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and FMA Act Bodies)에 입각하여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해당 법령들은 연차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필수 요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CMA의 연차보고서는 성과 보고서 FCC나 Ofcom과 달리 중장기적 계획이 아닌 이슈별로 당해 연도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본문이 아

닌 부록부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같은 재정 보고, 사무실 정보, 각종 리스트 등을 수록하고 있다.

넷째, 이탈리아 AGCOM은 비교 대상 국가들의 연차보고서와 달리 서두에 위원장 인사말이나 목차 없이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통신시장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AGCOM의 연차보고서는 성과보고에 있어 관련 시장 분류에 따라 당해 연도 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AGCOM의 연차보고서는 국제적 관계 및 국내 관련부처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주요국 연차보고서 검토결과 직년 년도 결산보고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 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추진 성과를 계량화된 수치로만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정책적 차원에서 성과를 기술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방통위 정책성과의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결산 보고서를 연차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결산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방송통신위원회)을 참조, 그 기본 틀을 상당부분 차용했다. 이는 연차보고서가 연초의 업무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성과 분석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으로, 이 부분은 다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송통신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의 소분류로 나누어지며, 이 각각에 대한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두 번째 대분류는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선진 방송 정착”으로, 이 부분에서는 방송정책을 중심으로 방송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방송의 다양성확대를 통한 국민문화 향상도모,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의 자율성 제고, 방송품질의 제고와 시청권 보장의 소분류로 나누었다.

세 번째로 통신 및 주파수 정책 전반에 걸친 업무성과를 “이용자 편익 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제목아래 살펴보았다. 이 부분의 소분류는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신규 통신 서비스 활성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시장 친화적 전파이용 규제체계 정비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대분류 하에, 인터넷의 안전성과 건전성 제고, 네트워크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 접근기회 확대 등 보안, 네트워크 투자,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성과를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각 실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시스템을 준용,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성과를 분석했고, 이러한 자료는 결국, 향후 발간될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의 바람직한 발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 연차보고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발간될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방송통신위원회(2008), 「2008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도 회의록
방송통신위원회(2008)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08) 국회 업무보고서
ACMA(2007), 『Annual Report 2006-07』
AGCOM(2006), 『Annual Report on activities carried out and work programme
2006』
FCC(2007), 『Fiscal Year 2007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Ofcom(2008),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period 1 April 2007 to 31 March
2008』
PM&C(2008), 『The Requirements for Annual Reports for Departments, Executive
Agencies and FMA Act Bodies』
ACMA 홈페이지 <http://www.acma.gov.au>
FCC 홈페이지 <http://www.fcc.gov>
Ofcom 홈페이지 <http://www.ofcom.org.uk>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08-01

방송통신 연차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전조사

발 행 일 2008년 12월 (비매품)

발 행 인 최 시 중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처 (주)서 등
